기본연구 2012-30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영역간 협력방안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 세 훈(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공동연구 안 지 호(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 전 민 정(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졸)

서 문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전 시기에 비해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나 사회구성원간 소통의 욕구, 여가, 취미활동과 같이 정서적, 심미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들은 이러한 변화를 특징짓는 모습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문화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사업들은 비단 문화정책 담당 부처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기술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처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서비스가 여타 다른 정책 영역들과 상호 연계, 협력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이나 국방, 기술 등과 같은 영역들도 향후 문화예술정책이 새로이 주목하고 협력해야 할 영역들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협력활동들도 기 구축되어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위에서 보다 활성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융합과 통합의 시대에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영역간 협력활동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2년 9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개요

제1장 서 론

○ 사회적으로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제반 사업들이 타 부처에서 문화부보다 더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 다수 발생

○ 양해각서체결을 통한 타 부처와의 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왔다는 제한점을 보임

○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타 부처와 협력,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 공공서비스 관련 제한된 인적, 물적 여건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제기

○ 이 연구는 문화예술정책이 타 부처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타 부처와의 연계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그 동안 타 부처와 협력/연계하여 추진한 사업들의 현황 파악, 둘째, 타 부처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어떠한 내용으로 타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임

○ 이를 위해 타 부처 조직구조와 업무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문화예술정책과 협력, 연계가 가능한 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부처간 협력(또는 연계)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 부처간 협력 사례(국내·외)
-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 조직 및 업무 분석
- 기존에 추진된 타 부처 협력 사업들에 대한 분석, 평가
- 부처간 협력, 연계의 장애요인
- 문화예술정책과 타 부처 협력 방안

제 2 장 타 부처 협력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부처의 협력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타부처간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의 대상인 타부처 역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 협력사업을 통해 각 부처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인프라와 인력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협력행정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정책집행의 차원에서 이러한 부처간 협력업무가 많은 효과가 발생

○ 최근의 부처간 협력사례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영역을 발굴하고 확장함으로서 주관부처는 물론 협력부처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처간의 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임

○ 최근 부처간 협력업무에 부정적인 측면 혹은 한계점은 대부분의 부처간 협력업무가 정책의 집행차원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보다 수준 높은 부처간의 협력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인 수준의 안정적인 부처간 협력보다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적인 협력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 장기적인 부처간 협력과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수단 필요

제 3 장 타 부처 문화예술 관련 분야 및 활동 실태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문화정책과 관련된 15개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 법안 그리고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이를 통해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간 연계 특히 법률과 같이 강제적으로 그 이행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그동안 해당 부처 소속 법률이 아닌 경우 소극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해 온 경향이 파악됨

○ 또한 법률과 기본계획에 문화사업과 관련된 협력업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부처간 협력은 매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음

○ 타 정책영역과의 협력은 중앙부처간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현장 수준에서 관련 기관, 단체간 협력이 필수적임

○ 적극적인 부처간 협력을 유도하기 부처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제 4 장 문화예술정책 타 부처 협력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부처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기존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영역을 우선 발굴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영역 개발해야 함

○ 또한 기존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문화예술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연계 방안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

○ 그리고 타 부처나 위원회 가운데 문화예술정책관련 연관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협력 또는 연계체계 우선 구축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타부처와의 효과적인 협력업무가 가능한 7가지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과학분야는 최근 들어 '창의성'을 중심으로 과학과 예술간의 상호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음

○ 둘째, 기술분야 역시 과학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이 핵심인 분야이자 문화정책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점차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분야로, 최근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인문융합창작소'는 기술영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타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를 계기로 보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

○ 세 번째는 국방분야로 군 문화활동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방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네 번째 영역은 근로복지 분야임. 그동안의 문화예술정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으나, 일반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은 정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므로, 문화정책을 근로정책과 연계하여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이들의 복지와 결합하여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섯 번째 국제교류 분야 문화정책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 또는 신규 사업 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여섯 번째 분야는 지식재산 분야로 문화정책은 문화예술분야의 지식재산 정책이 어떻게 규정되고 수립,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나 제도에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은 보건분야로 보건분야와 문화예술영역은 향후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협력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으로는 정책기획/수립 단계부터 협력 확대, 협력사업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내 융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 마련 필요성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4

1. 연구내용 ····· 4

2. 연구방법 ····· 5

제2장 부처간 협력 이론 및 사례 ····· 7

제1절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이론적 분석 ····· 9

1. 협력의 배경 ····· 9

2. 부처간 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 9

제2절 비문화분야 부처간 협력 사례 ····· 61

1. 부처간 협력 특징 ····· 61

2. 협력 사례 ····· 77

제3절 문화분야 부처간 협력 사례 ····· 102

1. 부처간 협력 특징 및 현황 ····· 102

2. 협력 사례 ····· 124

제4절 해외사례 ····· 133

1. 영국 ····· 133

2. 독일 ····· 139

제5절 시사점 ····· 147

1. 국내사례 시사점 ····· 147

2. 해외사례 시사점 ····· 156

제3장 타 부처 문화예술관련 분야 및 활동 실태 ····· 335

제1절 타 부처 문화예술 유관 조직 및 사업 ····· 555

1. 타 부처 문화예술 유관 조직 및 업무 ····· 555

2. 타 부처 문화예술관련 사업 사례 ····· 585

제2절 타 부처 담당 문화예술관련 법률 조항 및 계획 ····· 76
1. 타부처 법률 중 문화관련 조항 ····· 76
2. '문화분야'가 포함되는 기본계획 ····· 47
제3절 시사점 ····· 94

제4장 문화예술정책 타 부처 협력 방안 ····· 79
제1절 기본 방향 ····· 99
제2절 타 부처 정책 협력 분야 ····· 100
1. 과학 분야 ····· 100
2. 기술 분야 ····· 101
3. 국방 분야 ····· 102
4. 근로복지 분야 ····· 103
5. 국제교류 분야 ····· 104
6. 지식재산 분야 ····· 106
7. 보건분야 ····· 107
제3절 정책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 91
1. 법률에 기반한 정책기획, 수립 단계 참여 확대 ····· 91
2. 협력사업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111
3. 부처 내 융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 마련 ····· 211

참고문헌 ····· 114
ABSTRACT ····· 118
부록 1. 문화분야 부처간 MOU 내용 ····· 120
부록 2. 타분야 법률 중 문화관련 조항 및 내용 ····· 231

표 차례

<표 1> 동일 수준의 부처간 협력(SGVSSA, 2007) ·····1····· 1
<표 2> 부처간 갈등의 원인 ·····3 1
<표 3> 협상, 조정, 중재, 재정의 특징 ·····5· 1
<표 4> 부처간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비문화부문) ·····7····· 1
<표 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1····· 2
<표 6> 2010 군 문화예술교육 추진실적 ·····4·· 2
<표 7> 군부대 문화순회사업 현황 ·····5· 2
<표 8>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 교육 기본 방안 주요내용(2010.07)
····· 27
<표 9> 학교오케스트라 지원사업 규모 ·····0·· 3
<표 10> 소외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현황 ·····1····· 3
<표 11> 추진 기관별 역할 ·····2 3
<표 12> 국내외 부처간 협력사례 시사점 ·····2·· 5
<표 13> 중앙정부 타 부처 내 문화관련 과(팀) 편제 ·····6····· 5
<표 14> 문화예술분야 직·간접 관련 업무 담당부서 ·····6··· 5
<표 15> 교육과학기술부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예산 ·····9····· 5
<표 16> 교육과학기술부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중점과제 유형 ·····0····· 6
<표 17> 중점과제 예술교육선도형 20개교 ·····0·· 6
<표 18>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세부내용 ·····2··· 6

그림 차례

[그림 1]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 교육 지원협의체계(2010.07) ····· 28
[그림 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운영모형 ····· 9 ···· 2
[그림 3]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 ····· 9 ···· 2
[그림 4] Living Places 프로그램 협력 네트워크 ····· 7 ····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제반 사업들이 타 부처에서 문화부보다 더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 다수 발생

○ 한정된 재원과 서비스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부의 경우, 문화예술공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연계, 협력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필요에 따라 문화부는 그동안 MOU 체결을 통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비스 확대를 위해 타 부처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해 왔음

○ 양해각서체결을 통한 타 부처와의 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왔다는 제한점을 보임

– 새롭게 발굴, 시행되는 사업들의 경우 기존에 체결된 MOU에 근거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타 부처와 협력,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 공공서비스 관련 제한된 인적, 물적 여건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는 문화예술정책이 타 부처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 타 부처와의 연계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그 동안 타 부처와 협력,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둘째, 타 부처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어떠한 내용으로 타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임

○ 이를 위해 타 부처 조직구조와 업무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문화예술정책과 협력, 연계가 가능한 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음

- 대통령 선거와 뒤 이을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업무 분석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업무 영역들은 부처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다른 부처에서 수행되는 만큼 일정한 의미를 가짐

○ 타 부처의 조직 및 업무 분석을 통한 연계방안 모색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조항 및 제도 등 분석

-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법률에서는 문화예술정책 분야가 참여하여야 하는 업무들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가운데 문화예술정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정한 내용을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업무 협력하는 방식을 구상해볼 수 있음

○ 타 부처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협력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부처간 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외국의 경우 부처간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일부 검토함

○ 부처간 협력은 문화예술분야 공공서비스 확대라고 하는 실무적 차원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이 조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위에서 협력의 방향과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부처간 협력(또는 연계)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 부처간 협력 사례(국내외)
-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 조직 및 업무 분석
- 기존에 추진된 타 부처 협력 사업들에 대한 분석, 평가
- 부처간 협력, 연계의 장애요인
- 문화예술정책과 타 부처 협력 방안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부처간 협력 관련 이론적 논의, 실제 수행사례에 대한 분석 보고서, 각 부처 담당 조직 및 업무 분석, 기 진행된 협력사례 분석 등은 문헌 및 기 작성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

○ 자문회의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부처 유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구성

○ 인터뷰

- 실제 협력사업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부처간 업무 협력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제2장

부처간 협력 이론 및 사례

제1절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협력의 배경

○ 현대의 많은 공공문제들은 성격상 상호 연결(cross-cutting)되어 있어, 행정기관들 간의 기능적 경계 속에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일 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움

- 다수의 행정기관들도 공동 목표 하에서 주어진 기능적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함으로써 특정 이슈의 해결이나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상호 수평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된(혹은 연계된) 대응 또는 봉사를 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기관간의 경계선을 횡단하면서도 기존의 기관 간 경계선 자체를 제거함이 없이 연관성이 있는 각 기관의 활동을 조정함을 목표로 함

○ 오늘날 행정기관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계층제(vertical hierarchies)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적 과업 수행을 위한 내부적 장치와 문화를 필요로 하게 됨

2. 부처간 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부처간 협력에 대한 논의의 기본전제는 정책결정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또는 집행상황에서의 복잡성 때문

○ 부처간 협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규범적 접근과 현실적 접근으로 나뉨

- 규범적 접근은 부처간 협력이라는 당위적 목적을 전제로 이론적 논의를 출

발함. 이에 반하여 현실적 접근은 왜 협력이 어려운가라는 문제에서 정부간 협력이론을 전개함

○ 기존 연구들은 협력관계보다는 갈등관계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임

가. 당위론적 접근: 부처간 협력 관리

○ 정부는 현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책문제들을 복수 기관의 통합되고 조정된 반응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과 시민들에게 이음매 없는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가짐

- 따라서 모든 선진국가의 행정에서 협력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최근 부처간 협력관리가 각국 정부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음

-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통합형 정부, 총체형 정부, 정책 정합성, 총체적 정부, 네트워크 정부, 통합적 거버넌스 등의 개념과 정치적 구호를 통해 정책 간의 네트워킹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 부처간 협력관리는 크게 연계형 정책결정(joined-up policymaking)과 연계형 정책집행(joined-up implementation),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차원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정책결정은 노인, 유아, 수송 등의 조정된 정책을 가리킴
- 정책집행은 one-stop-shop을 통해 복수의 서비스를 전달, 지역버스들의 시간조정(synchronization of local bus) 등의 집행행위를 의미

○ 부처간 협력관리는 적용 대상에 따라 특정 집단(노인, 이민자), 특정 지역(region or locality), 특정 정책부문(교통, 보건 등)으로 구분

○ 부처간 협력은 주로 공공부문의 상이한 주체들이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연계형 거버넌스(joined-up governance)를 지향함으로써 공공부문 기관들 간은 물론 다른 비영리 주체나 자원봉사체 등과의 협력을 모색

○ 부처간 협력은 거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가짐

- 동일 수준의 정부(a tire of government) 내 행정기관들 간 혹은 사업영역(portfolios)간
- 상이한 수준의 정부간(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 정부와 여타 부문(민간부문 등)간에 활동을 조정

<표 1> 동일 수준의 부처간 협력(SGVSSA, 2007)

동일 수준의 부처간 협력(SGVSSA, 2007)
■ 전정부적인 전략적 목표(Whole of government strategic objectives), ■ 정책개발(Policy development), ■ 프로그램 관리(Program management), ■ 규제(Regulation), ■ 공동의 서비스 전달(Shared service delivery)과 여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one stop shops' 등이 포함

1) 부처간 협력의 내용

○ 단일 기관만으로써는 제공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

○ 각 부처 기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복성 제거 및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상대측 부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단일 부처로서의 편향적 사고를 개선하고 정책적 시야를 넓힘으로서 부처 간 칸막이 제고

○ 다른 업무환경과 경험을 보유한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이고 끊임없는 교류와 학습을 통해 집단지성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 공급자로서의 편의보다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확산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함

2) 부처간 협력의 수단: 정책조정과 정책통합

○ 정책조정
-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외성, 비정합성, 누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임
- 정책조정은 부문정책의 효율성을 최고 목표로 두며 일회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각 부문 정책이 공통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음

○ 정책통합
-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활용
- 공동의 목표 하에 관련 정책들을 차후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재정렬하는 것임
- 정책통합은 관련부처별 기관별로 분화되어 있는 정부기능을 하나로 묶거나(정책연계), 정책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문 간 정부공유 및 교환(정책협력), 투명성 제고와 갈등회피(정책조정) 증의 노력을 포함
- 정책 통합은 시스템 구성요소인 부문 정책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정책들을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거나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하여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 록 유도하는 일련의 노력임

나. 현실론적 접근: 부처간 갈등관리

○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부처간 갈등에 대해 부정적 악의적 요소를 해소하고 순기증적이며 긍정적인 갈등의 요소만을 사용하기 위한 의미에서 다양한 과정들이 도입되기 시작 일반적으로 이를 갈등관리라고 함

○ 갈등관리의 목적은 갈등을 제거, 방지,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와 이득을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임
- 즉 갈등관리란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약화 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정적 능력으로써 갈등해소를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임

1) 부처간 갈등 개념

○ 복수의사주체간의 갈등유형으로 조직적 갈등과 조직 내의 집단 간의 갈등을 말함

– 의사결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도 복수의 의사결정내용이 상반됨으로써 서로 갈등하는 상화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 부처간 갈등의 특징

○ 부처간 갈등은 대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이해관계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음

○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갈등유발의 폭 역시 확장. 따라서 정책갈등의 해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

○ 갈등해결에 이르기까지 정책지연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정책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큼

○ 따라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 주요 정책갈등현안의 해결절차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

<표 2> 부처간 갈등의 원인

구 분	내 용
상호의존성	작업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부처 내에 있는 집단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지원, 순응 등 상호 협력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기
부적절한 유인, 보상과 감독	부처간에 제공되는 유인이 최적화에 도달하기 못하고 미달 될 때 갈등 발생
비대칭성	부처간 업무에서 발생하는 작업, 권력, 지위, 지식의 비대칭적인 상황이 갈등 유발
역할 불만족	역할이 모호할 때 갈등이 야기
커뮤니케이션 장애	부처내의 커뮤니케이션은 형식적으로 많은 장애 요인들에 의해 둘러싸인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 발생
개인적 기술과 자질	부처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배경, 교육, 나이, 사회적 지위, 출신지역 등의 요인들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모호성	모호성은 부처간 상벌, 절차, 수단 평가기준 등 다양한 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부처간의 갈등을 증대시킴

3) 부처간 갈등 관리전략

○ 정책갈등이 부처간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전략으로 일반적인 갈등관리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는 정부를 개인, 집단, 조직의 집합으로 간주할 때 개인, 조직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된 갈등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것임

○ 하지만 부처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 집단 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갈등관리기법이 요구

– 명령(command)과 통제(control)가 2C에 의한 관리라면, 간접관리는 4C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함

- 당사자간에 활성화된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 문제해결의 열린 마음의 화해와 조정(conciliation)
- 당사자 이해관계의 양보에 의한 타협(compromise)
- 합의된 내용을 협조하여 집행하는 협력(cooperation)

– 간접관리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간접적인 수단이나 제삼자에 의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 간접관리 수단에는 제한이 없음. 간접관리의 수단으로는 개선된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계약조건의 충실힌 이행과 불이행 때 제제, 형상, 보조금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음

4) 제3자에 의한 갈등관리

○ 일반적으로 갈등해결의 주제에 따라 상위기관에 의한 해결방법과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음. 이 중 제 3자란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개인, 집단, 혹은 조직일 수도 있음

○ 제 3자에 의한 갈등관리 전략으로는 협의, 회유, 중재, 조정, 재정, 강압 등의

전략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

- 협의: 당사자들이 이들과 관련된 자들 간 의논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해결책들을 찾도록 제3자가 주선하는 전략
- 회유: 갈등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을 제3자의 의견이나 제시된 대안에 따르도록 구슬리고 달래는 전략
- 조정: 제3자가 갈등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 화해를 이끌어 내는 협상전략.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외부 사람이 선택하면 합의에 의해서 조정자가 내린 결정이 구속적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음. 즉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자가 내린 결정에 대한 갈등당사자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음
- 중재: 제3자가 갈등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서 당사자의 욕구를 조율하여 해결하는 전략임. 원칙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중재는 비자발적이 공적 성질의 것임
- 재정: 일반적으로 구속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 3자가 개입하는 갈등해결 전략
- 강압: 갈등 당사자들을 물리적 힘, 법적 강제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

<표 3> 협상, 조정, 중재, 재정의 특징

구분	협상	조정	중재	재정
자발성 유무	자발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비자발적
제3자 유무	없음	당사자 선택에 의한 외부인	당사자 선택에 의한 제3자 일반적으로 해당주제에 대해 전문가임	강요된 중립적 제3자로서, 해당 주제에 비전문가일 수 있음
구속력 유무	협의에 의한 구속력 설정기능	합의에 의한 구속력 설정가능	구속력 또는 비구속력 존재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의 대상이 됨.
공식성과 조직성의 정도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비조직적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비조직적	공식성의 제도가 낮음,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절차적 규칙과 내용에 관한 법이 결정될 수 있음	미리 정해진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공식성과 조직성의 정도가 매우 높음
절차의 성격	증거, 논증, 이익 등의 제출에 재한이 없음	증거, 논증, 이익 등의 제출에 제한이 없음	각 당사자가 증거나 논증을 제출할 기회를 가짐	각 당사자가 증거나 논증을 제출할 기회를 가짐
결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바랐던 바의 합의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바랐던 바의 합의	이성과 원칙에 의거한 의사결정 이거나, 이성에 의거하지 않은 타협	이성과 원칙에 의거한 의사결정
사적 유무	사적	사적		공적

제2절

비문화분야 부처간 협력 사례

1. 부처간 협력 특징

○ 최근의 비문화분야 부처간 협력사례를 살펴보면 현실론적 접근보다는 당위적 접근이 설명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이유는 행정의 민주화,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성의 증대로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을 각 부처가 점차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기서 소개된 대부분의 비문화분야 부처간 협력사례는 정책결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통합이나 정책조정의 형태 보다는 정책집행의 차원에 집중되어 각 부처의 실무자들간의 소통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보다 고차원의 정부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간 정책의 공동 설계와 결정에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이는 비문화분야 부처간 협력사례들이 각 부처가 영역다툼을 위한 분쟁적 관할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거나 공무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협약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에서 보듯이 행정안전부가 주가 되어 관련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의 협력보다는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협력으로 제한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권력현상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결정과정보다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은 부처간 협력이 제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2. 협력 사례

○ 연계업무 활성화를 위해 문화분야를 제외한 부처간 주요 업무협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부처간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비문화부문)

기 관	체결일	내 용
노동부-행정자치부	2007.2.6	공무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협약
법무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2010.10.27	출소예정자 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협약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생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행정안전부,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6.27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

가. 노동부-행정자치부 업무협약(2007)

1) 개요

○ 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

○ 양 부처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개선과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 교육협력강화

-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인사교류 실시

2) 추진체계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사업 전담기관을 노동부는 한국노동교육원으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함

○ 한국노동교육원 및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실무협의체' 구성

나.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업무협약(2010)

1) 개요

○ 출소예정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소 후 안정적 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필요

○ 출소예정자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

2) 추진체계

○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법무부, 고용노동부·중기청, 부처합동 실무자 회의, 과장급회의
  – 출소예정자의 취업·창업 지원 융합행정 추진계획 마련

○ 현장근무자 의견수렴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업무협약서(MOU) 체결. 관계부처간 협의 개최

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약(2010)

1) 개요

○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자살문제, 인터넷 중독 등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등이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

○ 소아·청소년기의 주요 정서·행동발달경향을 조기에 진단하고 정신건강문제로의 악화방지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지원을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학생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를 위해 협력

○ 학교의 선별검사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학생은 정신보건센터 또는 Wee센터에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와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실시

○ 교과부・교육(지원)청・Wee센터・학교 등에서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관리필요학생 지속관리를 위한 지역 전문기관(정신보건센터, Wee센터 등)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복지부・중앙정신보건지원단・정신보건센터 등에서는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생에 대한 심층사정평가 및 심리치료 등 추구관리 지원

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업무협약(2010)

1) 개요

○ 행정안전부는 2012년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업무협약(MOU)'체결

○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 공간 내 중금속 검출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 노력 체계적으로 추진

○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음

2)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재난안전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등의 협의체 마련

○ 시설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행정안전부・환경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안전검사 및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3절

문화분야 부처간 협력 사례

1. 부처간 협력 특징 및 현황

○ 최근 들어 타 부처와 문화정책영역이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사회적 정책수요를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화정책영역의 신설, 기존 정책영역의 재편 등으로 문화정책 영역이 확장되어 옴
- 예술 분야가 사회 각 분야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력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협력 유형 및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 (국방부: 문화적 병영환경 조성,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법무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지원 등)
- 인력양성 및 활용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 농어촌이모작 사업 실시, 농촌·문화 분야 활동가 상호 교차교육)
- 공동이익의 추구 (해양수산부: 해양관광활성화– 가고 싶은 섬 사업 등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와 한식의 세계화– 국가별 현지화된 20개 대표 한식메뉴 개발, 한식 페스티벌 개최, 2009 한국스타일 박람회, 지식경제부: '문화와 기술의 융합,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을 지향하기 위한 양해각서 (정통부: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 등)
- 타 부처의 인프라 활용 문화부 정책 활성화 (노동부: 문화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법무부 등: 선진 출입국심사체계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등,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남한강 예술특구 관련)

로 구분할 수 있음

<표 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기 관	체결일	내 용
정보통신부	2004.10.01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
과학기술부	2005.04.20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의 연계발전
법무부	2005.08.29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지원, 저작권보호, 관광진흥
해양수산부	2005.10.06	해양관광활성화
국방부	2005.12.06	문화적인 병영환경 조성
교육과학기술부	2008.10.15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2009.03.11	농식품 수출확대
노동부	2009.06.16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중소기업청	2009.12.17	전통시장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2010.05.06	농어촌 지역 활성화
법무부	2010.06.08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2010.06.09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효율화지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10.06.23	국가표준 용어 정비 및 보급 (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	2010.08.18	청소년의문화예술체험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코바코	2010.10.25	남한강 예술특구관련
중소기업청	2010.12.21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
법무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1.03.08	선진 출입국심사체제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2011.05.11	패션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법무부,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06.22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법무부 교정본부	2011.08.25	교정시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보급·지원(국립중앙도서관)
행안부 지방행연수원	2011.11.09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분야 교육역량 강화(예술의전당)
교육과학기술부	2012.03.09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지식경제부	2012.07.12	문화와 기술의 융합, 한류와 기업의 동반발전
국토해양부	2012.07.03	한옥 활성화 및 한국적 공간 확산

○ 문화분야 활성화를 위한 문화부와 타 부처간 주요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문화부-지식경제부 MOU(2012.7.12)

○ 문화부와 지식경제부는 문화예술콘텐츠와 기술/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류문화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과 한류의 동반발전을 위해 MOU 체결

○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합의

○ 주요 협력 분야: △ 한류문화 및 산업진흥 △ 기술개발 및 혁신 △ 융합인재 양성 △ 기업메세나 지원 및 창의적 문화조성 △ 해외진출 및 홍보 등

나. 문화부-교육과학기술부 MOU(2012.3.9)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 토요스포츠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주요 내용은 △스포츠강사 및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주중 평일에 개최되는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하는 사업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 등임

다.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MOU(2010.5.6)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양부처의 다양한 농촌지역 관련 사업이 부처별 전문영역에 특화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정책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공동워크숍, 농촌마을 이장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와 심포지엄, 농촌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협력사업 마련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문화 이모작 시범사업(경북 영덕군, 전남 강진군), 대학생 농촌 '문활' 전국 확산, 매개인력 상호 교차 교육 및 유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공동 사업을 추진

○ 예산 : 농식품부 7억원, 문화부 7억원 분담

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MOU (2010.6.8)

○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어린이·청소년·일반시민 등 전 국민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법 문화 콘텐츠 확충에 협력 합의

○ 법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을 테마로 한 여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2011년 상반기까지 개발
-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게임 개발 업체 공모

○ 저작권 보호 및 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마.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MOU(2010.8.18)

○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

○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확대, 청소년 수련시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사업 실시,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 멘토 지원, 소외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 업무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양 부처는 각 부처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2. 협력 사례

가.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1) 개요

○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문화적인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사업 실시

- 이 사업을 위해 문화정책 영역에서는 2006년 2억여원에서 2010년에는 13억여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군 문화활동 활성화에 투자

○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군부대 문화순회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 문화순회 사업은 연극, 무용, 전통, 다원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가 군 부대를 순회공연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에는 170여개 부대가 참여하는 등 크게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 또한 연극, 뮤지컬, 음악, 영상, 사진 등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2006년 11개 부대를 대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89개부대가 참여하는 등 크게 확장됨

<표 6> 2010 군 문화예술교육 추진실적

구 분	참여인원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1,687명
명예교사 프로그램	4,000명
정훈장교 워크숍	160명
군무원 연수	112명
국방대학교 합동참모 연수	65명
합 계	6,024명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가이드(2010)

<표 7> 군부대 문화순회사업 현황

년도	프로그램수	공연횟수	수혜장병수(명)
2008	14	132	83,811
2009	16	155	60,830
2010	16	167	72,243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가이드(2010)

○ 국방부는 군 문화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군과 문화예술영역과의 연계, 협력활동을 크게 강화

–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005년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도 MOU 체결. 또한 한국메세나협의회,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등과도 협력관계 구축

2) 추진체계

○ 병영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간 MOU는 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과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 국방부에서는 문화정책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실제 업무는 각 군별 본부(육군 본부, 공군 본부, 해군 본부)의 정훈공보실에서 담당

○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군 부대이므로 각 군 본부에서 협조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선정한 문화예술교육강사가 파견되어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

3) 성과 및 과제

○ 초기 관심이 크지 않았던 국방부에서 점차 관련 예산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군부대 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체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사, 장교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정훈관련 장교들이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발견되고 있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급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장병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수요간 불일치를 들 수 있음

– 실무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대별 상황이 달라 특정 부대에 따라 수요가 높지 않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일부 병사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여전히 군 전반에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군 생활내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지 못하면서 각 부대간 프로그램 운영에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는 전체 장병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광범위한 장병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군 및 장병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나.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1)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문화예술교육분야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10년 7월에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 교육 기본 방안' 공동 발표. 이후 초·중등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의 진행

○ 이에 기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사회 기반형, 교과부는 학교 기반형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사업 진행

– 사업내용: 지역 사회와 학교를 거점으로 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전국 단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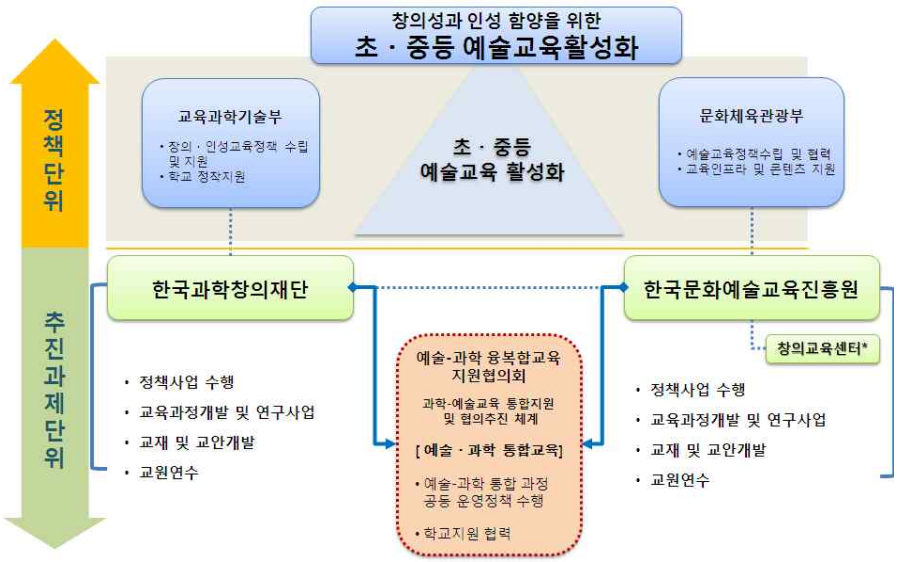
– 사업목적: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예술적 능력과 인성을 함양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

<표 8>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 교육 기본 방안 주요내용 (2010.07)

내 용	부 처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 음악·미술 등 정규 예술 교과 활성화 · 국어 등 일반 교과에 예술수업기법 적용 권장 · '1학교 1예술실 현대화 사업'(1,000개)과 '예술 교과교실제'(100개) 추진 · 문화부 초중등 예술강사파견 확대 ('10년 4,150명 →'12년 7,000명)	문화부 교과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체험예술교육 강화 ·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 (ARM: Arts education Resources Map)개발 ·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인증제』도입 및『대학생 문화봉사제도』도입	문화부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 기 지정된 30개 예술·체육중점학교 조기 정착 유도 · 연극영화, 디자인, 실용음악 등 분야 다양화 및 확대	교과부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 대학의 시설·인력 활용을 위해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 · 교육청부설 예술분야 영재학급 등 설치	교과부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 과학예술영재학교 또는 과학예술고등학교(특목고)지정·운영(1개교) · 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 등 과학교육중심학교의 예술교육 강화	교과부
예술교육지원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문화예술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 · 문화부, 교과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협의회 (분기 1회) 운영	문화부 교과부

2)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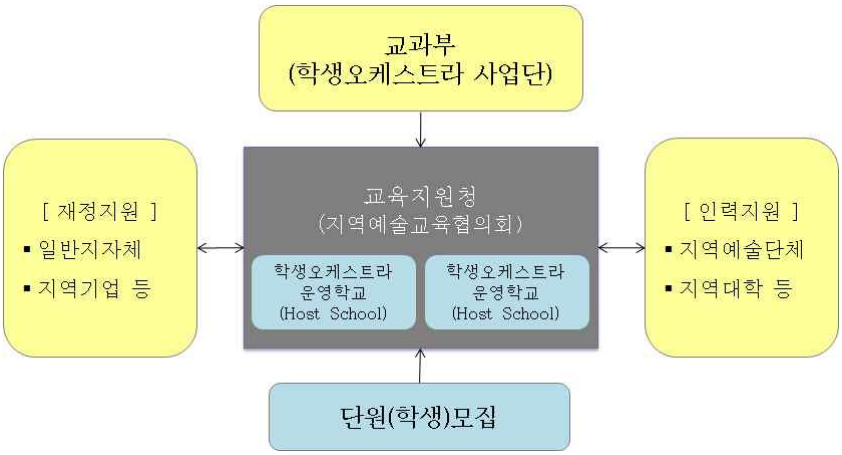
○ 부처간 협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와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과가 중심이 되어 협력활동 전개



[그림 1]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 교육 지원협의체계(2010.07)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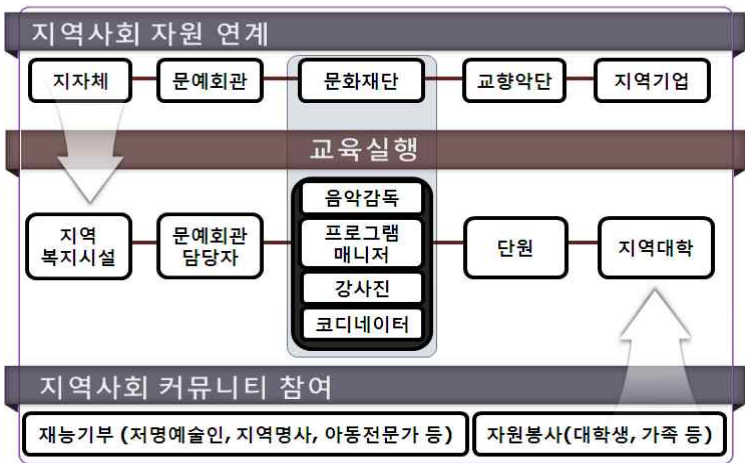
- 2011년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7개교, 총 65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선정. 2012년 상반기 85교, 하반기 초등학교 64교, 중학교 56교, 고등학교 27교, 특수학교 3교 등 150개 학교 추가 지정하여 총 300교로 확대 운영
- 문화소외 지역의 학교에 대한 예술적 능력향상과 인성 함양 및 교육 불균등 해소 추진
-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하여 학교 단위로 추진
- 지원규모(2012년 하반기 신규지정학교 기준): 악기구입, 연습시설 구비 등을 위한 창단 구성비용 1교당 연간 8천만원 지원
- 교과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초기비용지원, 관계자 연수, 컨설팅 등 지원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 운영), 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orimoa.or.kr)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의 문화예술계, 예술대학, 예술전문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운영



[그림 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운영모형

○ 문화체육관광부: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교육을 문화기반시설과 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지자체나 민간의 기존 사업 현장에는 저명 예술인의 재능기부레슨, 연합캠프 등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구축: 국공립 오케스트라와 저명 음악가, 전문 공연장 등 음악계 참여



[그림 3]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

- 2011년 8개 문화 재단(인천, 대전, 춘천, 부산, 목포, 부천, 화성, 익산)을 거점으로 교향악단, 대학 등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추진, 2012년에는 총 10개 기관 추가 선정(서울, 원주, 청주, 안동, 목포, 전북, 제주, 평택, 조건부 선정 2개 기관(전남, 경기))
- 지원규모(2012년): 총 1,100백만원 (1개 기관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역단위 오케스트라 교육 신규지역거점 운영기관 총11개 기관 지원)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는 한편 기업, 지자체, 음악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계획 발표

<표 9> 학교오케스트라 지원사업 규모

구 분	2012	2011	2010
지원규모	20개(기존9, 신규 11)	9개(기존6, 신규3)	8개

다.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1)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자기이해, 공동체 의식 증진, 개개인의 문화예술분야 소질 개발 등을 위해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확대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010.08.18)

○ 이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대상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뮤지컬 등 4개 장르에 대한 공동체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연화를 목적으로 한 '상상학교' 운영

-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소외청소년(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 우선지원 70% 우선지원) 및 일반청소년(청소년시설 및 기관 소속 청소년 30% 이내)을 지원대상으로 함

○ 상상학교 운영기관: 공연화 사업이 가능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사업방식: 시범지역(4개)별 전문예술단체가 예술감독 역할을 하고 10 ~ 12월 장르별로 발표회 개최

○ 지원규모: 4개 지역, 35개 청소년 시설, 청소년 460여명 참여(2009년 16개 시·도 운영기관 92곳 / 청소년 1,253명, 2010년 16개 시·도 운영기관 96곳 / 청소년 1,546명)

<표 10> 소외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현황

지역	분야	운영단체	공연 개요	참여 학생수
인천	연극	국제아동청소년 연극협회한국본부	○ 공연명 : 우중산책(옴니버스 형식) ○ 일시/장소 : '11. 12. 3.(토)/ 인천아트플랫폼 등	106명
서울	무용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 공연명 : 청소년 감성 키움 프로젝트 '상상학교' ○ 일시/장소 : '11. 10. 9.(일)/ 호암아트홀 ※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2011) 공식프로그램	130명
대전	밴드	사운드스케치	○ 공연명 : 여행 ○ 일시/장소 : '11. 12. 17.(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89명
경기	국악 뮤지컬	퓨전 코리아	○ 공연명 : 전쟁과 화합 ○ 일시/장소 : '11. 11. 12.(토)/수원청소년문화센터	132명

2)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협력활동 기관으로 지정

○ 총 4억원의 사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각 2억원씩 분담

○ 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교류협력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사회교육팀)에서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개 시·도 주관단체와 협력하여 운영기관 선발 및 참여청소년 지원·관리, 대국민 홍보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운영기관이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각 운영기관의 참여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활동기록부 제공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권역별 특화된 장르에 전문 예술단체 예술감독 협업 참여

<표 11> 추진 기관별 역할

구 분		세부내용
주최	여성가족부	– 물적인프라(시설) 및 인적인프라(청소년) 지원/사업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공연화사업PM) 지원/사업비 지원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업주관단체로 해당사업 운영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도 주관단체 및 운영기관 선발 지원 · 간담회, 현장방문 운영 · 사업설명회, 언론홍보 등 해당사업 홍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주관단체로 해당사업 운영 · PM(공연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단체 공모 및 선정, 계약 · 운영기관 소속 강사 워크숍 및 공연제작 워크숍 운영 · 공연화 발표회 진행
시·도주관	시·도 주관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지역 내 사업 홍보 · 참가신청서 접수·심사·선발 및 지원 · 운영기관 간담회 및 평가회의 진행 · 정산서 접수 및 검토 등
운영기관	청소년 기관·단체·시설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공연화 사업 운영

※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1.05.26) “여성가족부·문화부, 전국에 40개‘상상(相翔)학교 ’만든다”

제4절

해외사례

1. 영국

가.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

○ 문화매체체육부 주요업무 중 '예술과 지역사회(Arts and communities)' 분야에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명시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예술을 통한 영국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
- 지역사회・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
- 법무부 예술포럼(Ministry of Justice's Arts Forum)정회원: 예술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킴
- 예술과엔터테인먼트위원회 TF(UK Borders Agency Arts and Entertainment TF): 영국을 방문하는 해외 아티스트와 공연예술인 지원

○ 2008년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전략 보고서에서는 문화매체체육부(DCMS)와 산업・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3개 부처가 협력하여 26개의 사업과제 발표

□ 협력사례 1: Living Places 프로그램

○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예술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재생 프로그램으로 2009년 3월 착수하여 201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5개의 문화예술기관과 이들을 지원하는 4개의 정부부처가 공식적으로 협력한 최초의 사례로 남음
- 4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CA), Regional Cultural Consortia(RCCs)

- 5개 문화기관: Arts Council England,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English Heritag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MLA), Sport England
- 5개 중점지역: South West, Pan-Thames Gateway, Corby, Partnership for Urban South Hampshire, Pennine Lancashire

○ 사업실행을 위해 '공동협정(Joint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공동협정에서 명시한 협력사업의 목표와 취지는 다음과 같음

-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계획 수립, 공공영역 자원의 가치 극대화, 전략상의 목표와 효과의 기대치 증대
- 개별 단체 내에서의 현황 재조명, 현 자원한도 내에서의 협업, 추가자원을 통한 특정 협업프로그램 착수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려

○ 운영규칙

- 부처의 대표(chief executives)와 고위 공무원(senior officials)으로 구성된 고위운영조직위(high-level steering group) 결성하며, 의장은 DCMS가 맡음
- 합의내용의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각각의 조직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는 역할
- 모든 협의체에서 실무단은 협약과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기 모임 개최. 업무 진행을 위해 소규모 하위그룹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 지님. 회원제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초청 멤버들도 활동할 수 있음
- Partner Group은 월 1회 미팅을 하며, 6개월에 한번 DCLG와 DCMS의 장관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함

○ 협약에 명시된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과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음

- DCMS와 DCLG는 5개의 특정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체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함
- 각 부처, 기관들간의 공동 투자를 권유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함
- 문화기관들과 DCLG는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해야함
- DCLG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장려하며, 지역과 지방협력업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립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의 실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함

○ 이에 따라 Living Places 프로그램은 국가차원, 지방차원, 지역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정부부처간의 협력은 국가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짐

- 국가 차원의 협력은 지방과 지역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에 영향을 주는 정부간 이해당사자들과 일하는 것임
- 문화와 스포츠의 기반을 확립하고 계획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조사분석과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간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국가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주요업무

- 1. 문화와 스포츠 툴킷(Culture and Sport Planning Toolkit)제작 및 배포: 국가차원에서 유용성과 혜택 전파 및 접근성 강화
- 2. 5개 지역에서의 시사점 도출: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성과를 학습하고 공유하며 전략적인 방향 제시. 국가차원에서의 파트너 연계. 커뮤니케이션과 정부 각료 방문을 통한 국가 플랫폼차원에서의 프로모션 진행
- 3. 사례분석을 통한 새로운 증거 수집 분석 및 조사와 평가작업 의뢰, 주요 정보 포털 웹사이트 운영
- 4. 협의사항에 대한 공동 회견(joint responses)을 통해 정부간 의견 공지 및 반대 의견 대처

○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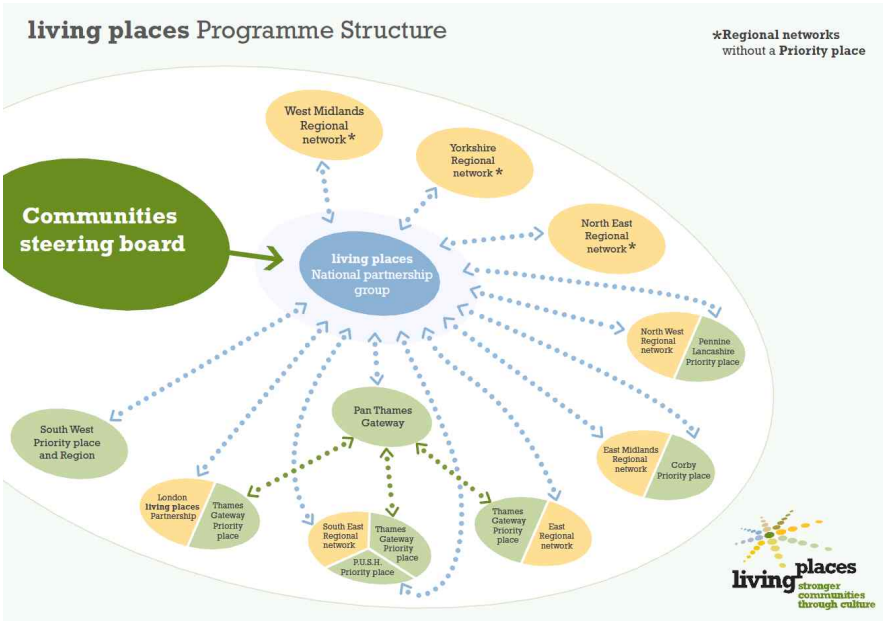
- Communities Steering Board(CSB): NDPBs, DCMS의 대표, CLG의 고위공무원, LGA를 포함한 지방정부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DCMS에서 주관하며, DCMS의 업무추진과정을 감독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인 개요를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연2회 모임 개최
- National Partner Group(NPG): 7개 조직의 실무자(senior officer)로 구성된 CSB 운영조직으로 MLA가 의장을 맡아 월 1회 모임을 갖고 사업전략 방향을 수립하며 CSB에 분기별 보고를 진행하고 풀타임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트타임 보조직원을 지원받음
- 소모임(Sub Groups): 최소 연2회 미팅, 정족수는 최소 3명으로 의사결정 사항을 NPG에 정기적으로 보고

○ 정부간 협력사업 결과

- 2009년: NPG의 설립과 성장, 향후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주는 적절한 포지셔닝(positioning), 관련 주요 정책개발자들의 문화와 스포츠 지지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평가를 통해 나타남. 문화부의 최초의 실질적인 협력사례로 NPG(National Partner Group)가 미래정책개발에 영향을 주고 개입하기 시작하게 되었음
- 2010년: 협력기관들은 더욱 성공적으로 CLG, HCA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전략적으로 과제기반으로 접근하여 발전시켜 나감. HCA와 CLG가 에코타운(eco-towns), 지역사회 기반구축 추가부담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사업계획과 같은 프로그램 관련 논쟁에 각자의 방식대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 프로젝트인 에코타운(Eco-towns)은 PPS(Planning Policy Statement) 수립 후 관계자 및 관계부처에 조언을 구함
- 이에 Living Places 파트너십에서는 에코타운 개발자들에게 Culture and

Sport Planning Toolkit(CSPT)을 권고함

- 에코타운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 및 스포츠 시설 필요하다는 판단에 에코타운 개발초기부터 이를 포함시키도록 함[1)]
- NPG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문화기관간의 운영 포럼이자 Partner Group 소관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류 그룹이었으며, 국가차원에서 문화기관 참여회원들의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그림 4] Living Places 프로그램 협력 네트워크

※ 자료: http://living-places.org.uk/

□ 협력사례 2: Sea Change 프로그램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DCMS가 지원(£45백만)하고 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에서 주관하

1) http://living-places.org.uk/living-places-in-action/case-study-subject/eco-towns.html

여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 낙후되어 있던 잉글랜드의 해변 지역 휴양지를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재생하고자 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 28개 지역 해변휴양지의 신규 공연 및 전시공간 조성과 극장 보수, 산책로 복원, 해변경관 리디자인을 위해 투자함

○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영역에서 연합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진행을 간소화하면서, 문화분야 이외에도 지역사회・지방자치부(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와 같은 문화외의 부처에서도 환영을 받음

- CABE는 주관파트너로 자문, 신청서 평가, 의사결정과정의 조정 역할을 함

○ 문화분야 NDPB(Non-departmental Public Body, 비정부공공 기관)간의 문화협력의 긍정적이고 선도적인 사례가 되었음

- 이런 류의 문화분야간 협력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Sea Change프로그램은 NDPB사이에 기술을 교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NDPB간에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고 향후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의 초석을 다짐

○ 협력기관

- Arts Council England, BIG Lottery Fund,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English Heritage, Heritage Lottery Fund,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2)]

나. 문화매체체육부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문화교육협력

○ 영국 문화매체체육부와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위탁하여 그 결과물로

2) Sea Change Evaluation Final Report February 2011 (http:/www.cabe.org.uk/sea-change)

'Cultural Education in England(2012.03)' 발표

- 배경: 문화교육의 개념적·내용적 요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내·외적 목적 설정,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제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함

○ 해당 연구 보고서에 정부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영국정부에서 위원회 설립을 약속함

- 정부 기관 상호 간 협력 관계 구축(Cross-departmental Government Co-operation)제언: 문화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는 정부 내 서로 다른 부서에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ig Society'와 복지 정책 의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창의적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문화 교육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 이에 따라 문화교육분야에는 문화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의장이 되는 새로운 범정부장관회의(cross-Whitehall ministerial group)가 구성되어야 함
- 제언에 대한 영국 정부 답변: 교육부와 문화부는 국가간에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위해 함께 일하는 협의체들에 비전을 전달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할 것임[3)]

2. 독일

가. 문화-창조산업프로젝트(Initiative Kultur- und Kreativwirtschaft)

○ 문화-창조산업 영역은 독일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써 2008년에만 132백만 유로의 매출 달성

---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2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영국 3월 교육동향], Cultural Education in England: http://www.culture.gov.uk/publications/8875.aspx

○ 현재 독일에는 약 238,000개의 기업과 100만명에 가까운 종사사가 문화-창조경제 영역에 종사

○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문화-창조산업 프로젝트' 시작

○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와 연방상원의 문화언론부(Beauftragten für Kultur und Medien) 주도
- 연방외무부(das Auswärtige Amt),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für Justiz), 연방재정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연방 노동 및 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그리고 연방 교육 및 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가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

○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매년 문화-창조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분석함
- 이를 통해 문화-창조경제 분야의 구조, 기업들의 어려움과 요구 등 기업과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함
- 문화-창조경제의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기술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개선함
- 자유예술가, 중소기업이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 독일내 문화-창조경제의 해외에서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의 문화창조경제 분야의 정보를 지원함
- 예술인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이를 공고히 함

1) 지역사무소를 가진 경쟁력센터(Kompetenzzentrum mit Regionalbüro)

○ 에쉬본(Eschborn)에 소재하고 있는 경쟁력 센터는 문화-창조경제 프로젝트의 핵심임

○ 경쟁력 센터는 문화-창조분야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역할 수행

○ 경쟁력센터는 독일 전역에 소재한 많은 문화-창조기업에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쟁력센터에 근무함

○ 경쟁력센터의 업무

- 문화창조기업의 전문화
- 정치, 경제, 행정의 협력을 통한 지원
- 문화 기업 설립자를 위한 현장지원 촉진
- 이를 위해 지역 사무소가 핵심 역할을 하여 기업가들에게 각종 정보와 조언 제공
- 산업 동향, 면담, 지역 네트워크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의도 지역경쟁력 센터의 지방사무소에서 지원함[4)]

나. 바덴-뷔르텐베르그(Baden-Wuerttenberg)주의 지방사무협력국 (Einrichtung der Landesarbeitsstelle Kooperation: LAK)

○ 지방사무협력국(LAK)과 30개의 지역사무협력과는 연방-주-지역 협력모델의 결과로 발전한 것임

○ 지방사무협력국 모델은 바덴-뷔르텐베르그주와 작센주에서 1992년 2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음

○ 이 모델의 목표는 청소년 사무와 학교정책에서 학교와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것임

○ 1995년 주의 문화, 청소년 그리고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를 통해 지방사무협력국이 설립된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계획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서 실시되었음

1) 학교 정책과 청소년 사무간 협력

○ 청소년 정책은 학교정책과 더불어 젊은이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

---

4) CRS in Germany,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www.csr-in-deutschland.de.

- 청소년 정책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정책과 다른 원칙인 자조(Selbstorganisation), 자유(Freiwilligkeit), 참여(Partizipation)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다양한 대안 중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특별한 방법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우수한 젊은 인력을 뽑기 위해 학교생활은 물론 청년들의 학교 외 활동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계획에서 학교와 학교이외의 교육기관과의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이한 교육수요와 청소년 사무의 특수성에 따라 청소년사무와 학교사무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

○ 이에 지역 교육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지역의 정책환경에 맞는 청소년-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청소년-교육정책에서 지역협력사무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전술하였듯이 청소년 사무는 특별한 원칙인 자조, 참여, 자유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담당기관과 학교 업무 및 조직적 특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지방협력사무국은 양 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이를 위해 지방협력사무국은 양 기관의 담당 업무,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의사교환을 가능토록 함

○ 지방협력사무국은 청소년 사무와 관련된 주의 모든 조직과 협력함
- 예를 들면 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연합, 기독교 청년조직, 바덴-뷔르텐베르크 청년 적십자연합

2) 청소년아카데미와의 협력(Akademie der Jugendarbeit Baden-Württembert e.V)

○ 지방협력사무국은 청소년 사무와 학교사무의 협력을 위해 청소년아카데미와 상호협력관계 유지

– 지방협력사무국은 청소년아카데미와 함께 공동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

○ 주 문화, 청소년,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는 이 연수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함

○ 학교 교사를 청소년 문제전문가와 짝(Tandem)을 이루어 전문조언가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

○ 이 교육연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됨.

– 1. 협력의 이론적 기초적 문제들이 토론되고, 상호간의 협력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논의됨. 또한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사와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문제와 학교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눔

– 2. 이미 실행중인 청소년사무와 학교정책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지식 등이 연수과정에서 공유되고 확신됨

○ 연수교육은 단지 참가자 스스로 협력을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축을 촉진하고 다른 협력 사업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하는 데에 목표를 둠

3) 협력사무의 확장: 청소년사회복지사업과의 협력

○ 최근 협력프로젝트들은 청소년 사회복지사무를 청소년 사무 및 교육 사무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청소년 사회복지사무는 제3의 협력파트너로 학교와 청소년 사무와 협력하고 있음

○ 학교사무, 청소년사무 그리고 청소년사회복시사무의 협력은 광범위하면서 전문적인 계획과 집행에 필요성을 부각시킴

○ 최근 지역협력사업국은 청소년 기관과 학교기관의 협력은 물론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부상하는 문제인 청소년사회복지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4) 주청년연합(Landesjugendring)과의 협력

○ 주청년연합(Landesjugendring)은 학교와 청소년 사무의 협력에 있어 핵심이고 특히 종일학교(Ganztagesbildung)업무에서 주협력사무국과 공동으로 교육, 청소년사무를 계획하고 집행함

○ 주청년연합과 지방협력사무국의 협력내용
- 지역의 청소년 사무에 대한 지원과 조언
- 교육/청소년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조언과 지원(예를 들면 학부모, 청소년 관련 조직, 지역대표)
- 청소년사무/교육사무와 관련된 워크숍, 심포지엄, 전문가회의, 메세(Messe)의 개최와 지원

○ 주사무협력국의 업무
- 교육청 지역사무협력과와 협력
- 주청소년청, 국가교육청과 그리고 청소년-교육정책의 이익집단들과의 협력
- 주의 부처들과의 협력
- 지역협력사무소에 정보 및 조언 제공
- 학교위원회와의 협력
- 어린이, 청소년 지원정책의 제공
-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문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 주의 청소년-교육정책 네트워크 형성
- 공부방 시설 지원
- 지역을 넘어선 재교육 정책 지도

○ 서비스 제공자로의 협력사무국
- 문서상/구두상의 책임
- 학교 협력의 문서화
- 정보의 생산
- 조언서비스(컨설팅)

-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언
- 일반사회서비스를 통한 제공
- 지원시스템을 통한 협력사무의 조언 (학교복지사업, 청소년 직업교육,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도움지원)[5]

다. 아동, 환경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생태 도시네트워크사업 (Stadtteilnetz Soziale Ökonomie für Kinder, Umwelt und Gesundheit)

○ 베를린의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Friedrichschain-Kreuzberg) 구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구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임
- 이 지역은 이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사회구조가 빨리 변화하여 평균소득이 낮고, 한 부모 자녀의 비중이 높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자의 수가 다른 베를린의 구보다 많기 때문에 보건환경이 열악함(이 곳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낮고, 알코중독자의 비율은 높음)

○ 이러한 환경은 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나쁜 영양공급, 알콜중독 및 중독성 증상 등을 유발하는 문제 초래

○ 이에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유익한 환경을 구축할 조치들이 필요하였음
-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생태 구축사업'은 환경과 건강이 결합. 이를 위해 환경과 보건의 영역에서 부처를 넘어서는 협력체계 구축

○ 사업의 목적: 베를린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구에서 실험되는 있는 이 사업은 아이들과 이들의 가정 사회적, 생태적 그리고 경제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5) "Jugendbildung in Baden Württemberg" Informationen des Ministeriums für Kultus,Jugend und Sport(2010)

- 아동과 가정의 사회간접자본구축
- 생태적이고 사회적으로, 점진적인 거주지 형성
-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건강한 영양 급식
- 스포츠와 놀이 가능성 향상
- 어린이의 폭력과 약물사용 방지
- 일자리와 소득 창출

○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 환경, 보건의 도시네트워크 구축
- 건강을 증진하는 개별적 프로젝트의 집행
- 사회적 기업 연맹 구축의 체계화 등

○ 협력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는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지원조직, 지역활동가, 지역연구소, 행정조직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룹들이 참여

– 이 프로젝트에는 아동분야, 환경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자발적 시민, 행정조직과 학술 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Casa Piesa
- Klasse 2000 연맹
- 베를린 공과대학 공공보건연구소
-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구청
- 베를린시 보건부
- 베를린 기술연합
- 베를린 주민센터

제5절

시사점

1. 국내사례 시사점

가. 부처간 협력활동 활발

○ 문화부와 타 부처간 업무협력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부처간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최근에 체결된 '학교 토요스포츠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MOU)'은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문화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체결된 것으로 사회 변화 및 이에 대한 부처간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향후 이러한 협력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시너지 효과 증대

○ 부처간 협력 행정은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출소예정자 취업·창업'을 위한 부처간 협력활동은 출소예정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창업 지원체계 구축을 가능케 함. 특히, 출소 전 교도소 내 직업훈련과 출소 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출소예정자의 취업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하였음. 그리고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출소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또한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인프라 및 전문성을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향상시킴.

– '학생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부처간 협력활동은 개별 부처로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 유관기관과의 갈등 가능성 해소

– 행정안전부가 환경부,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와 추진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협력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로 인한 유관기관 간 갈등가능성을 해소하였음

다. 새로운 정책영역 확장 계기

○ 과거 업무협력 분야가 주로 기존의 문화예술영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업무협약은 문화정책 영역에 새로운 영역이 도입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문화정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지식경제부와의 업무협약은 문화정책이 기술분야와 연계,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국토해양부와의 업무협약은 문화정책이 보다 직접적으로 건축, 공간정책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약 또한 문화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시장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라. 정책 기획보다는 집행 차원의 협력

○ 문화부와 타 부처간 업무협력관계는 주로 정책결정(계획, 조정, 통합 등)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책집행 차원의 실무적 협력에 집중되어 있음

– 이마저도 단기 사업에 국한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협력관계 유지가 해당 사업 추진기간 동안만 짧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부처간 협력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단계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의 협력이 중요

마. 협력 목적 및 한계 인식 미흡

○ 업무협력 방식은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문화부에

서 문화활동을 타 영역에 확산시킬 필요이고, 다른 하나는 타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문화분야 활동을 보급하려고 하는 필요임

○ 대부분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문화부에서 타 영역에 문화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 문화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타 부처도 그러한 필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극적 입장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국방부와의 업무협력 사례는 군 장병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의미와 가능성, 한계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방부 등 추진 부처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성과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됨을 보여줌

자문회의 내용

– 과학이나 기술, 산업 분야에서 문화를 접근하는 방식은 문화가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방식임
  · 과학 '문화', 기술 '문화', 산업 '문화' 등 주가 되는 영역에 대해 이를 구현해주는 내용으로서의 문화를 언급하는 것이지 문화 자체 또는 문화가 제공할 수 있는 효과 등에 주목하는 것은 아님
– 과학이나 기술, 산업 등 타 영역에서 문화연관 사업을 기획할 때 주로 '과학, 기술, 산업 등을 주제로 한' 전시나 공연 등에 국한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임
– 곧, 문화예술의 외형을 빌어 해당 영역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함

바. 업무 협력 추진체계의 중요성

○ 업무협력은 중앙부처간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사업의 실무 집행을 위해서는 이를 주관할 기관들이 각 부처에서 별도로 지정되거나 하나의 기관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각 부처별 사업주관기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청, 한국과학창의재단(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이 있음

○ 이 때, 중앙부처간에는 업무협력이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실무집행기관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사업의 효과가 최대화되기 어려움

2. 해외사례 시사점

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하는 경향이 있음
- 영국의 경우, 지역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게 하기 위해 하드웨어로서의 시설, 건축 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콘텐츠웨어로서의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독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각 이루어지고 있던 학교, 청소년, 청소년 복지관련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나. 정책설계와 결정과정에서의 협력

○ 독일의 문화창조산업프로젝트와 청소년, 교육정책의 지방협력사무국 사례에서 보듯이 새롭게 성장하는 경제분야(문화산업)와,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청소년 및 교육정책)에서 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들을 신설하여 정책집행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설계와 결정과정에서까지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짐

○ 그러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부처간의 업무중복과 분산 문제는 해외에서도 나타남
- 영국에서도 문화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부서에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다.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 문화창조프로젝트의 지역경쟁력센터와 같이, 문화경제와 관련한 각 부처의 협력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경제산업의 주요 행위자들인 예술인, 중간 혹은 소규모 문화기업과 에이전트들에게 컨설팅, 각종 메세(Messe), 문화경제관련 행사 등을 주관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역할 부여

– 독일의 문화창조프로젝트 사례는 협력업무 전담기구를 협력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이러한 전담기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 제공

라. 중층적 지원체계

○ 부처간 협력이 단순히 중앙정부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수준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national)-지방(regional)-지역(local) 차원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

– 영국 'Living places'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은 지방 및 지역차원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지역차원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들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

○ 부처간 대규모 협력사업의 경우 위원회 및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지역간의 업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중앙정부부처는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각각의 핵심 조직이 적절한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맺고 사업을 추진토록 함

– 즉, 각 부처에서는 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표 12> 국내외 부처간 협력사례 시사점

구 분	시 사 점
국 내	– 부처간 협력활동 활발 –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 새로운 정책영역 확장 계기로 작용 – 정책 '기획'보다는 '집행' 차원의 협력 위주 – 협력 목적 및 한계 인식 미흡 – 업무 협력 추진체계의 중요성 부각
해 외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多부처간 협력 – 정책 '설계'와 '결정' 과정에서의 협력 –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 (중앙→광역→기초) 중층적 지원 체계

제3장

타 부처 문화예술관련 분야 및 활동 실태

제1절

타 부처 문화예술 유관 조직 및 사업

1. 타 부처 문화예술 유관 조직 및 업무

○ 현재 정부조직도 상 중앙부처(청 제외) 수는 15개임.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 편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문화정책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영역과 연계될 수 있는 조직편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외교통상부는 외교와 통상을 다루는 중앙부처이지만, 제2차관 아래 문화외교국을 두어 문화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 문화외교국에는 공공외교정책과, 문화예술사업과, 문화교류협력과 등 3개 과가 있으며, 이 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문화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짐

○ 국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는 2009년 문화정책과를 설치하여 군 장병의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디자인공간문화과와 유사한 건축문화팀을 설치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문화방송예산과, 통일부의 사회문화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과, 지식경제부의 디자인브랜드과 등은 문화정책 업무 영역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기타 타 부처에서도 광범위한 차원에서 문화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

<표 13> 중앙정부 타 부처 내 문화관련 과(팀) 편제

구 분	과(팀)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 대학지원실 학술인문과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 문화정책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문화예술정책과, 문화교류협력과, 공공외교정책과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정보문화과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디자인브랜드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건축문화경관팀

○ 이 가운데 문화예술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의 부서 및 업무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4> 문화예술분야 직·간접 관련 업무 담당부서

부 처		업 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결혼 이민자 지원, 한국어·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이민통합과 : 다문화 복지, 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응 지원 시책 출입국기획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 : 농어업인 복지,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농촌 여성 농어촌산업팀 : 농촌체험 및 농어촌 민박, 농어촌산업 박람회,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관리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진흥과: 한식세계화사업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 남북한 간 사회·교육·학술·언론·관광·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 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인증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창조캠퍼스 지원,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한국어 해외보급 지원 및 한글학교 관련 지원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 : 창의, 인성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교육기부,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진흥 및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 수립(예술중점학교운영, 예술강사지원사업, 창의인성교육)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수립·추진
	대학지원실	학술인문과 :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인문사회 저술 및 출판, 인문강좌, 인문주간 등 인문학 대중화 추진,

부 처		업 무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 추진, 인문학 포럼 및 인문사회 연구성과 활용・확산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	문화정책과 : 국방 문화, 병영예술체험사업 및 부대 문화예술 공연, 대외 문화행사 지원 및 국제 군 문화교류 관련사항, 민간 영상매체 제작 등 군 문화에 대한 지원업무, 군 문화재 보호 및 전사적지 관리, 국방 홍보원, 전쟁기념 사업회 업무의 지도, 감독
여성 가족부	청소년가족 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 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총괄
외교 통상부	문화 외교국	문화예술정책과 : 해외 공연・전시 업무, 미주 양자 문화 협력, 수교기념 문화행사,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 재외예술인 활용사업, 문화외교자문위 및 문화홍보 외교사절 운영, 한식 세계화 사업 지원, 문화원 관련 업무, 관광 분야 교류 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초청 사업 총괄 문화교류협력과 : 스포츠외교, 태권도・체육 분야 교류 지원, 국제 체육대회 유치 지원, 중동·아프리카 양자 문화협력, 구주 양자 문화협력, 한류(방송・영화・콘텐츠) 지원, 테마형 문화외교사업, 청소년 교류 총괄조정, 교육・학술 교류,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외교부 비영리 법인 설립 인허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지도・감독 공공외교정책과 : 문화외교 정책 수립・시행, 공공외교 총괄, 한국국제교류재단 관리・감독, UNESCO 외교정책 총괄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문화협력, 아시아・오세아니아 양자 문화 협력,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진흥 총괄, 국가보훈처 사업 지원,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총괄
행정 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 : 테마별 우수도서 콘테스트 등 도서홍보 및 마케팅, 접경지역지원 종합개발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지원, 평화벨트 구축 및 평화시범도시 도입방안 마련・시행,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보건 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고령사회정책과 :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지식 경제부	신산업 정책과	디자인브랜드과 : 디자인 진흥정책, 디자인코리아, 디자인문화화산 등
국토 해양부	도시 정책관	건축문화경관팀 : 국토환경(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역건축자산, 공공건축상. 부 건축문화행사 추진 및 지원(어린이 건축창의체험, 건축의날, 한국건축문화대상,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등)

2. 타 부처 문화예술관련 사업 사례

가.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1일 주5일 수업제에 대응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예술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2012년 하반기 예술교육 확대 방안' 발표

○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오케스트라 확대 운영 이외에 교육기부를 통한 만화·애니메이션·영화·디자인 아카데미, 국내정상급 예술가 100인의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기로 함

- 예술분야 각종 전문가 협회와 공공기관의 교육기부를 통해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디자인 부문의 토요 아카데미 운영
- 16개 시도교육청 소재 예술교육선도학교를 거점으로 하며 각 분야에서 교육기부를 약속한 전문강사 1,365명 참여
- 참여협회 및 기관: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경기도디자인총괄추진단,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영상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는 음악, 국악, 미술, 무용, 연극, 영상, 사진, 건축, 오페라, 뮤지컬, 애니메이션, 만화, 마임, 디자인, 대중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명예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 직접 지도하고,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
- 마스터클래스 장소로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예술교육선도학교 또는 인근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유적지, 작가 작업장) 등을 활용

○ 교육과학기술부는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양질의 예술교육 제공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관련 협회·단체·개인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예술교육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수립

1)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 주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과

○ 사업목적: 학교가 창의·인성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통해 변화의 중심이 되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경영의 방법을 찾고 이를 일반학교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

– 총 사업비는 105,200백만원(특교 102,500백만원, 지방비 2,700백만원). 1개교당 평균 20~65백만원을 3~5년간 지원하며, 2012년에는 총 24,25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 이 중 예술중점 대응투자 예산은 2,100백만원으로 지방비 예산의 77.7%를 차지

<표 15> 교육과학기술부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예산

구 분		예 산
특별교부금	개별학교지원예산	97,985
	공동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4,515
	합	102,500
지방비	예술중점 대응투자	2,100
	체육중점 대응투자	600
	합	2,700
총예산		105,200

○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2년에는 548교의 초·중·일반계 고등학교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중점과제 유형별로는 학력향상형 27교, 사교육절감형 142교, 교육과정혁신형 303교, 자율형 76교 선정

– 2012년부터 인성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신규학교 선정 심사기준에 인성교육 부문을 상향 조정(10~20%)하고, '인성교육강화'군을 신설하여 집중 관리

– 인성교육강화형 중에서도 예술교육선도형에는 20개교가 선정되었으며 학교당 평균지원액은 20백만원선임

– 예술교육선도형은 일반학교 내 교과활동 연계한 체험 중심의 예술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함

<표 16> 교육과학기술부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중점과제 유형

구분	학력 향상	사교육 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계
			고교 교육력 제고	인성교육강화			수업 개선				
				예술 교육 선도	학교 체육 활성화	건강 증진 모델	영어 교육 모델	미래형 과학 교실	선진형 수학 교실		
학교수	27	142	48	**20**	21	99	51	32	32	76	548

○ 예산지원이외에도 포럼, 컨설팅, 평가 등의 운영을 지원함

– 학교장 워크숍(연 2회) 및 포럼(연 6회)

– 학교경영지원사이트(www.schoolplus.kr)를 통한 노하우와 우수사례 공유

– 연수지원, 맞춤형 컨설팅, 사업운영 매뉴얼 보급

– 중점과제 유형별 성과평가 실시(차년도 예산지원·컨설팅 반영)

<표 17> 중점과제 예술교육선도형 20개교

구분	초등학교(15교)	중학교(4교)	고등학교(1교)
서울(1)		창덕여중(1)	
부산(1)	연천초(1)		
인천(1)	연화초(1)		
광주(1)			전남여상(1)
대전(1)	세천초(1)		
울산(1)		달천중(1)	
경기(2)	화중초(1)	성남여중(1)	
충북(1)	칠성초(1)		
충남(2)	천안남산초, 소원초(2)		
전북(2)	전주아중초, 성북초(2)		
전남(2)	석교초, 시전초(2)		
경북(2)	화령초(1)	명인중(1)	
경남(3)	위성초, 삼정자초, 대흥초(3)		

2) 인문학대중화사업

○ 주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사업목적: 인문학과 대중의 소통을 확대하고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007년부터 다양한 인문 강좌 및 행사를 지원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계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해왔음

○ 2012년부터는 대학뿐만 아니라 박물관·도서관 등 대학 외부의 각종 연구·사회·문화기관(단체)도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

- 2012년도 사업에는 총 29억 4천만 원 지원
- 전국 60여개 기관에서 무료 시민인문강좌가 운영되고, 공연·전시 등 일상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인문주간(Humanities Week)' 개최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및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사회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대규모 과제의 경우, 인문강좌, 체험, 축제 등 지역 내 인문자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 일반인·초중등 학생뿐 아니라, 노숙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인문학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함

○ 시민인문강좌에는 규모별로 과제당 15백만 원(30과제), 30백만 원(28과제), 1억(2과제) 등 총 14억 원 지원

- 특히 대형사업 2과제(연간 1억)를 신규로 추진하여 지역의 인문자산(인물, 문화재, 강좌, 체험, 축제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인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표 18>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세부내용

과제당 예산	과제수	예산총액	운영 내역
15백만원 이내	30과제 내외	450백만원	- 강좌 운영(소규모 중심) - 인문주간 참여 여부 선택 가능 - 지자체, 지역사회기관 연계 권장
30백만원 이내	28과제 내외	800백만원	- 강좌 운영 - 인문주간 참여 필수 - 지자체, 지역사회기관 연계 권장
100백만원 이내	2과제 내외	200백만원	- 지역 내 인문자원을 통합적 연계하여 강좌, 체험, 축제 실시 - 인문주간 참여 필수 - 지자체(교육청)와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 등) 협력 의무화
계	60과제 내외	1,450백만원	

3) 교육기부 프로그램

○ 주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네트워크팀

○ 교육기부수혜자와 기부신청자를 이어주는 매칭서비스를 교육기부포털(www.teachforkorea.go.kr)을 통해 제공함

○ 특히 2012년 여름방학동안 약 40만 명의 학생과 교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 68개 기업, 53개 대학, 214개 대학생 동아리, 153개 공공기관, 26개 출연연구기관, 94개 단체·협회 등 총 619개 기관(동아리 포함) 참여
- 교육기부 프로그램 717종: 교원연수 43종(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스마트교육 연수, 실용경제금융 전문가 과정 등), 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622종(진로교육 166종, 과학기술 150종, 인문사회 55종, 문화예술 128종, 체육 28종, 기타 95종), 교과학습 지원 52종 등

○ 기존의 과학기술 분야 중심에서 진로교육,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고루 운영하고, 교육기부 주체 역시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화함

–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70여개 기관과 교육기부 MOU 체결함

나.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육성사업, 농협의 1사1촌 운동, 수협의 어촌사랑 운동 등 유사한 내용의 캠페인성 운동이 동시에 추진되어 혼란스럽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대표 브랜드로 하여 농식품 관련 운동을 연계하여 전개 계획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어려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농어촌을 도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운동

– 특산품, 경관, 관광, 전통문화, 음식, 축제 등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차별화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 농어촌에 변화를 주도할 핵심 주체 육성, 도시민이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민의 농어촌 재능기부 촉진, 농어촌 발전을 모색하는 협의체인 농어촌 현장포럼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중앙: '국민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농어촌 현장포럼·마을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마을 발전과제 발굴, 지역별 추진방향 설정 등의 기능 수행

1)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의 사회·문화·자연환경 및 지역자원 등을 소재로 한 농어촌축제의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 가치 제고를 위해 '농어촌축제지원사업' 시행

○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활력 증진과 도농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 효과가

높은 농어촌 축제를 발굴하여 축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

○ 2008년부터 우수 농어촌축제 발굴을 위해 시·도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2012년부터는 축제당 국비 10~30백만원 차등 지원
- 지원실적 : 2008년 19개, 2009년 17개, 2010년 25개, 2011년 27개 등 총 88개 지원
- 지원규모 : 500백만원(국고·지방비 각 50%)

○ '농어촌축제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과 유사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매년 대표 축제 각 8억원, 최우수 축제 각 3억원, 우수 축제 각 1.5억원, 유망 축제 각 0.4억원 지원

2)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시범사업

○ 실무부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 주관기관: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김종찬),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오용원)

○ 사업목표: 마을단위 풍물놀이의 복원 및 전승으로 문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제고

○ 농어촌 마을별 풍물 등 강습을 통한 자발적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재 풍물패 등이 운영되고 있거나,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전국 40개 농·산·어촌 마을 지원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단에 악기 지원, 전문 강사 강습, 가을 축제(9~10월) 등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금액은 마을별 1천만원 이내로 사업비 전액은 주관처가 지정한 시행단체에서 집행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어르신, 청장년, 부녀자, 청소년, 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

다.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는 기존의 산업기술 중심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기술융합창작연구소'를 산업기술진흥원 안에 설치

○ 이러한 연구소의 설립배경에는 그동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만 있었으나 기술만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에 대한 인식이 자리함

- 기술안에서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외의 영역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

○ 기술융합창작연구소는 향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국내외 융합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과 융합정책연구 추진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융합 혁신사례발굴 및 웹기반 지식 공유기반 구축
- 미래시나리오 예측,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 1차년도인 2012년도 사업 구상은 다음과 같음

- 예산 20-30억
- 2012년은 시작단계로 원론적으로 접근하여 담론수준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과정
- 새로운 분야와의 만남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융합 콜로키엄 계획
  - 기존 지경부의 R&D사업을 기획하는 PD(실무최고자) 30-40명 대상
  -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으로 비기술 영역의 지식과 감흥을 전파하여 확산,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
- 이외에도 미래예측워크숍, 창조리더십 세미나, 토크콘서트, TED형식 프로그램 등 예정

○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술연구원과 기술인문융합창작소 등이 공동기획·연구하여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제품, 기술 비즈니스모델 발굴·기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MOU를 2012년 7월12일 체결

라.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업 가운데 보건관련 영역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에 따라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팀이 담당하는 이 사업은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나, 자격증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유관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 전공자,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력이 서비스 제공

○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예술을 활용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이 많으며,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 전공자들이 주로 치료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타 부처 담당 문화예술관련 법률 조항 및 계획

1. 타부처 법률 중 문화관련 조항

○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간 연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협력이 제시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연계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

○ 특히, 법률과 같이 강제적으로 그 이행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그동안은 해당 부처 소속 법률이 아닌 경우 소극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해 온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접근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법정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주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작은도서관[6]을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규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주택법이 비록 국토해양부 소관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기존 법률 가운데는 '문화' 또는 '문화분야'를 언급하고 있는 타 부처 법률이 적지 않음.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기보다는 잔여적 개념으로 치부하여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지나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기존 법률에 나타난 문화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려, 관련 협력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6) 작은도서관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 아래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와 그다지 관련 없는 분야로 생각되었던 분야 가운데 문화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살펴 봄

가. 지식재산 분야

□ 지식재산 기본법

○ 주관부처: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

○ 문화관련 법령 내용

–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함(제3조)

–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함(제29조)

○ 부처간 협의체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기구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행정안전부 7. 문화체육관광부 8. 농림수산식품부 9. 지식경제부 10. 보건복지부 11. 환경부 12. 국토해양부 13. 국가정보원 14. 국무총리실 15. 방송통신위원회 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7. 공정거래위원회 18. 관세청 19. 문화재청 20. 중소기업청 21. 특허청

나. 자원봉사활동분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문화분야 관련법령: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포함

○ 부처간 업무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고용 분야

□ 고용정책 기본법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문화분야 관련조항: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8, 2011.7.25>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문화분야 관련조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에 문화분야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라. 과학분야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획팀

○ 문화관련법령내용: 연구원의 사업 중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포함,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관광시설을 거점지구에 설치해야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7.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해양정책분야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문화분야 관련법령: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부처간 협의사항: 해중경관지구 지정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어촌특화관광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명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문화분야'가 포함되는 기본계획

○ 타부처 소속 법률 가운데는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적지 않음

○ 이 가운데 문화분야를 포함하여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관련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문화분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정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 수립에는 문화예술정책 영역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관련 연계, 협력정책 및 사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문화분야를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법률 및 관련 위원회 구성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가족 정책 분야

1) 기본계획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 가는 가족 2010(2006~2010)'
-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14개 부처 참여, 6대 영역, 14대 대과제, 31개 정책과제, 83개 단위과제
- 수정·보완('09.7):85개 단위과제,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11개 부처 참여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행복 더하기」(2011-2015)'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관련 법령 내용: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 부처간 협의체계: 없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2)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 내용: 가족여가 정보 제공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지원,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단위 자연 체험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내용: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포함),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 강화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의 통합 지원
- 내용: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일반, 청소년의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내용: 정책 담당자 등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나. 외국인 정책

1) 기본계획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1차 2008-2012)

○ 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 문화관련 법령 내용: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부처간 협의체계: '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포함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권의 장을 말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총리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외국인 체류지원강화

- 내용: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한국어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 환경 개선

- 내용: 외국인을 위한 문화여가환경 개선–문화시설의 다양성 부족 등 완화, 문화관련 정보 취득 어려움 해소, 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 개선(외국인 학교의 국내학력 인정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외국인 전용 문화시설(「작은 도서관」 등) 조성 등)

○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내용: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 강사 확충,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다문화관련 포럼세미나 개최,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 등 추진
- 주관부처: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법무부

○ 참여 및 소통강화

- 내용: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 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확대, 수용자중신의 지원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지자체를 중인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 강화
- 부처: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행안부, 법무부

○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내용: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이민자 자녀 학교생활 지원–다문화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 배치
- 부처: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 다문화가족 정책 분야

□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은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관련부처: 11개 중앙행정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

– 문화관련 법령 내용: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부처간 협의체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협의체를 두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내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내용: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 정책

1) 기본계획

○ 제1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 시행

○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1-2015) 5대 분야 부처합동 T/F구성 운영
- 기본계획과 각 분야 국가계획간의 유기적 연대 강화
-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충, 주택시장 안정, 공교육 정상화 등은 별도로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근거: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20조
- 문화관련 법령 내용: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4조)
- 부처간 협의체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포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5.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령[시행 2010.7.12]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지식경제부차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2010.7.12>

2)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내용: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내용: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 제공
- 내용: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인복지 인프라 시설 확충, 문화바우처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외국 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 내용: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라. 근로복지 정책 분야

1) 기본계획

○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근로복지 격차의 완화를 중점 추진

○ 제2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07-2011)」에서는 38개 정책 과제 추진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 문화관련 법령 내용: 사업주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제28조),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근로복지 진흥기금 사용(제91조)

- 부처간 협의체계: 별도 위원회는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문화여가활동 지원

- 내용: 문화센터, 근로자복지관 연계 주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로자 문화·예술제 개선 및 확대, 근로자 가요제와 문화제 참여 범위 확대
- 소관부서: 고용부 근로복지과

마.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

1) 기본계획

○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03.03)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11년- 15년)

○ 주관부처: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9조

- 문화관련 법령 내용: 없음
- 부처간 협의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협의체
- 주관기관: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하며,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1.7.25>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7) 2011년 분야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34개 기관에서 1,035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KOICA 포함, 5,868억원) 및 재정부(EDCF 포함, 9,106억원)가 총 ODA의 90%를, 기타 시행기관은 10%를 집행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시행령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고용노동부장관 10. 여성가족부장관 11. 국토해양부장관 1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2)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개발협력콘텐츠 개발
- 내용: (감성 분야) 외교부(KOICA), 재정부(EDCF), 문화부간 실무 T/F를 구성하여 추진

바. 계층정책 분야

1) 여성정책

□ 기본계획

○ 성평등을 실현하기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국가계획
- 제1차(1998-2002), 제2차(2003-2007), 제3차(2008-2012) 기본계획수립

○ 문화관련 법령 내용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부처간 협의체계: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실무회의

– 조정회의 위원과 실무회의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2조(여성정책실무회의)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5.6.23, 2008.2.29, 2010.3.15, 2010.7.12>

□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과학기술분야 등 여성 전문인력 육성

– 내용: 문화관광분야 여성인력 개발– 유망분야 중심 여성 진출 지원, 여성리더 양성, 신진여성문화인,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시상 및 홍보

–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 성장동력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 내용: 프로젝트중심의 디자인문화아카데미 운영시 여성비율 확대,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양성,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시 여성참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 고급 등 전문직종 분야와 남성 집중직종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개발훈련실시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접근강화

– 내용: 여성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여성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여가 활동 지원 확대, 문화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 평등문화 확산

– 내용: 양성평등문화지표 개발, 여성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여성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양성평등 문화정책 평가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 내용: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 문화유산의 생산적 가치 증진,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여성 문화 창작자 활동 지원 강화, 예술 학술 인적자원개발 분야 여성교류 협력 사업 지원

– 소관부처: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2) 청소년 정책[8)]

□ 기본계획

○ 제1,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2007),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2003–2007)에 이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수립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정책분야 86개 과제 수립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8) 청소년 정책은 1983년 문교부(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1985–1987), 1993년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제1,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정책을 소관했으나,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201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으로 조직개편

○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 13조

– 문화관련 법령 내용: 제3조 정의, 제7조 사회의 책임

○ 부처간 협의체계: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며(제10조)협의회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포함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경찰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계발 지원시스템 강화

- 내용: 체험활동정보체계마련(각부처의 청소년활동 관련 자원을 청소년활동 자원지도와 연계해 종합정보 제공), 문화부-창의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찾아가는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등 문화프로그램, 지역밀착형 문화예술진흥기금 프로그램사업 AERM(Art Education Resources Map) 등 연계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교과부 문화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대

- 내용: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스포츠활동 여건 강화, 주말활용 역사문화 체험 공연제험 프로그램 등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문화부

○ 가족 공유시간 확대여건 조성

- 내용: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의 위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습관광 등 가족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국립문화기관의 가족여가 문화프로그램 운영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전부처

○ 저소득층 및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내용: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험 바우처 사업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복지관광을 통한 국내여행 경비 지원
- 소관부처: 복지부, 교과부, 여성가족부, 문화부

○ 지역자원 통합 연계 서비스전달체계구축

- 내용: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정보 종합안내 '가족 청소년친화자원 전자지도 제작'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3) 장애인 정책

□ 기본계획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03~'07)계획에 이어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08~'12) 발표
-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함

○ 관계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문화관련 법령 내용: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8조(차별금지 등),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 부처간 협의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 문화분야관련 정책과제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 내용 1: 문화바우처 사업 및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 및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개최
- 내용 2: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표준수화와 한국점자규정의 보급으로 특수언어 표준화 도모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3절

시사점

가. 타 부처 조직 및 업무의 높은 문화정책 관련성

○ 문화예술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는 문화부이지만 타 부처에서도 문화예술과 유관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를 가진 사례가 나타남

–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국방부 문화정책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과 등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처의 업무 영역 안에서 문화, 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문화부의 문화정책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업무 수행

나. 문화정책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 그동안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져 오던 사업들이 타 부처에서도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축제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인문학대중화 사업, 지식경제부의 기술융합창작연구소 설립 등은 문화정책 영역에서 시행해오던 사업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자문회의 내용

–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요 사업 중 많은 부분이 문화예술분야와 연계되고 있음
  · 창의적체험활동관련, 과학융합아이디어 공모전, 과학시각화사업: 과학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 과학연극, 과학+책, 만화, 스토리텔링, 과학관련 공연과 전시 지원, 과학동아리 지원
  · 박물관 전시/행사 지원, 과학적 소스를 활용한 전시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시체험프로그램 운영
  · 과학문화민간활동지원사업
  · 과학토요토크, 네트워크 포럼, 과학융합포럼(前융합카페)
  · 교육기부사업 등
– 과학과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대중성을 가미하여 쉽게 풀어내면 반응이 좋고 인기 있음

다. 법률, 제도 등에 의한 공식적 연계, 협력 기반 기 구축

○ 타부처 소관 법률 중 문화분야 연관성을 가진 법률 다수 존재
- 타부처 중에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 건강가정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정책 등에서 문화부와 업무상 유관성이 가장 높음
- 보건복지부도 저출산·고령화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등 분야에서 문화부와 연관성이 높음

○ 타 부처 소관 법률 조항이나 기본계획 관련 규정시 문화분야가 포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임
- 지식재산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문화분야가 해당 법률 조항, 조문 안에 포함되어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다문화가정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해당 정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관련정책위원회 등에 문화부 장관 또는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

○ 이처럼 타 부처와 공식적으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부처간 협력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에 문화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문화부 장관 또는 차관을 관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처간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이는 정책기획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활동이 주로 집행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측면도 있음

라. 부처간 연계, 협력을 위한 매개 기반 취약

○ 조직 및 업무상 문화분야와의 관련성이 높고, 관련 법률에 의해 문화정책 분야와의 연계, 협력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연계, 협력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이나 지역문화정책 분야에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영역에서 협력 활동은 수동적이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짐

○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타 정책영역과의 협력은 중앙부처간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현장 수준에서 관련 기관, 단체간 협력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유관 기관, 단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식 및 지원 미흡

제4장

문화예술정책 타 부처 협력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 영역간 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필요
- 첫째, 기존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영역을 우선 발굴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영역 개발
- 둘째, 기존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문화예술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연계 방안 마련 또는 신규 사업 개발
- 셋째, 타 부처나 위원회 가운데 문화예술정책관련 연관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협력 또는 연계체계 우선 구축

○ 부처간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은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법률이나 제도적 기반위에서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행 MOU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은 단기적 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거나 정책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력한다기보다는 집행단계에서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다소 느슨한 연계가 이루어짐
- 부처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정책담당관'과 같은 제도적 접근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협력은 기존 법률, 제도에 의해 상호 협력이 규정되어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규 영역 개발에도 초점
- 융복합 경향에 따라 문화예술분야가 타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복지, 교육 영역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발굴 노력 경주

제2절

타 부처 정책 협력 분야

1. 과학 분야

○ 그동안 과학분야는 문화예술정책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분야임. 그러나 최근 들어 '창의성'을 중심으로 과학과 예술간의 상호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음

○ 과학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2008년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의 과학대중화사업에서 교육부분 사업을 강화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제3차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중
-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범부처계획) 분야에 문화예술분야 포함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은 주로 과학문화확산, 과학영재교육, 창의인성교육, 수학과학교육내실화, 융합인재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과학문화확산과 창의인성교육분야는 문화예술분야와 연관성이 높음
- 창의적 체험 활동 관련: 과학융합아이디어 공모전, 과학시각화사업(과학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
- 박물관 전시 및 행사 지원, 과학적 소스를 활용한 전시와 공연 지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시체험프로그램 운영
- 과학과 인문·예술의만남: 과학융합 우수콘텐츠·트렌드 발굴·소개, 과학융합포럼(前융합카페)운영
-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 사업: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

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지역 자원·시설을 활용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과학문화 민간활동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활동 지원

○ 향후 과학분야와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할 경우,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사업을 공동기획하고 예산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음

2. 기술 분야

○ 정부는 기존의 기술중심 접근을 통해서는 더 이상 큰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강조
- 이를 위해 정부는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지식경제 R&D 예산을 총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에 국가 지식경제 연구개발 전략기획단을 2010년 6월에 출범시킴
- R&D 부분에 투자되는 재원은 주로 산업기술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기술과 인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증가

○ 기술과 인문의 통섭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가치 창출에 기반한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인문학과의 통섭을 목표로 하는 '기술인문융합창작소'를 2012년 개소
- 유사한 맥락에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기술문화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기술과 관련된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보다 본격적으로 인문학과의 연계를 위해 창작소 설립

○ 기술과 인문분야의 연계를 위한 연계는 산업기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미 2011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시도한 바 있으며, 2012년 7월에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식과 문화예술의 연계 개발을 위한 MOU 체결

○ 문화정책은 기술영역과의 협력을 위해 기술인문융합창작소 등과의 연계에 기반한 정책 기획, 시행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산업기술진흥원내에 설치된 기술인문융합창작소는 개방/융합형 네트워크 구축, 융합정책 발굴 및 확산 인프라 구축, 기술과 인문이 융합된 창조적 산업정책방향 모색,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3. 국방 분야

○ 국방부는 부처내에 문화정책과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군 문화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문화정책영역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주로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군 문화활동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초기에는 문화부 예산으로만 실시되던 군 문화활동이 현재는 국방부 예산과 매칭을 통하여 지원됨으로써 규모 확대

○ 다른 분야와 달리 군과 관련한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군이 장병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

○ 국방정책과 문화정책의 연계는 취약계층 문화향유기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예술분야 잠재관객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영역이 경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군에서의 문화예술 경험은 제대 후 광범위한 관객개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군인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군인복지와 관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위원회에 문화관련 영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문화활동의 제공관련 조항을 삽입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정책영역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방정책과 연계하여 군 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4. 근로복지 분야

○ 그동안의 문화예술정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으나, 일반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은 정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문화향수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시간부족'이 수년 동안 중요한 문화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 2010년에는 2008년보다 '시간부족'이 더욱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는데, 2008년의 경우 시간부족(29.0%)보다 비용과다(35.1%)의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된데 비해, 2010년에는 시간부족(41.5%)보다 비용과다(29.3%)으로 지적
- 특히,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은 30-50대의 경우 '시간부족' 비중은 30대(44.5%), 40대(52.1%), 50대(50.5%)로 나타나 평균치를 상회

○ 따라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정책은 근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때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2008)에서도 문화복지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함을 지적

○ 고용노동부 소관인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되게 하기 위해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로 규정

- 현재는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이 수립, 시행중에 있음

○ 또한 법으로 '사업주,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제28조)할 것과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근로복지 진흥기금을 사용'(제91조)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규정(제9조)에는 근로자의 문화/여가/체육활동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나 위원회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근로복지 정책과의 연계는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기본계획에 문화예술분야가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을 문화정책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음

○ 이 때 구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업대상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 기업문화지수개발 및 문화기업 시상
- 근로자 문화예술체험 지원 확대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시 법적으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활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는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명기함으로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

5. 국제교류 분야

○ 세계 경제교역규모가 10-15위권을 차지하고, G20이나 핵안보정상회의 등 큰 국제행사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세계에서 24번째로 가입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음

○ 드라마를 시작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한류 효과는 최근 K-POP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으나, 대중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대외효과 이외에 국제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미지는 부재
- 경제선진국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책임있고 저력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적

○ 이러한 인식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문화영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
- 문화동반자 사업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상호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리더십을 갖추기에는 미흡

○ 외교통상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 제8조에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7조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2015'가 수립, 시행중에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

○ 이 기본계획에서 문화영역은 개발협력콘텐츠를 개발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문화정책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 또는 신규 사업 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국제협력개발기본계획에서는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문화정책 영역에서도 유상 또는 무상지원과 관련되는 내용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지식재산 분야

○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 법 제2조(정의)에서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등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지식재산기본법 제 29조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중요한 원천으로 문화예술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문화정책 영역이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야 함을 명시

○ 따라서 문화정책은 문화예술분야의 지식재산 정책이 어떻게 규정되고 수립,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나 제도에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보건분야

○ 문화의 효과와 관련한 해외 연구는 문화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 여기에서 사회적 효과의 하나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임(양현미, 2007: 103)

○ 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예술치료'라는 용어를 통해 확산

○ 이러한 환경에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8~13세 아동에게 12개월간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등 음악(악기) 이론 및 실기교육(주1회, 60분)과 연주회 관람, 향상음악회 개최, 악기 제공·대여 등 서비스 제공
- 특히 이들에게 성격유형검사(MMTIC), 우울증 검사(CDI) 등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제공하고 정서순화프로그램(주1회, 60분)을 실시함으로써 아동건강 차원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2008년 3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11년 말 현재 전국 13개 시도(97개 시군구)에서 총 47개 사업을 통해 7,829명의 아이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또한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2012년 8월 1일 개통

- 대상자와 대상자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우선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복지사업은 1단계에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가 포함되었으며, 2단계에는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문화바우처'가 포함될 예정임

○ 이를 위해 5개 부처가 참여한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 구성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구축·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 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

– 2011년 9월 총리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1여년 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보건분야와 문화예술영역은 향후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정책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1. 법률에 기반한 정책기획, 수립 단계 참여 확대

가. 이미 문화예술분야를 법률 안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소관법률이라 할지라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을 명기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차관이 관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 법률 다수 존재

○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 조성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기존 법률이나 제도 안에서 문화정책 영역이 포함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분야를 살핌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기획이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이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모색

– 지식재산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은 각 분야와 관련된 기본계획 또는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

○ 나아가 기본계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계부처간 업무협력 내용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예술분야가 관련 법률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향후 문화정책이 확산될 필요가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문화

예술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관련 내용이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군인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등 문화예술분야의 확산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에서는 문화예술분야 미언급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전 영역을 포괄하는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연직 위원으로는 참여하되 실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부 또한 기술과 인문(문화예술)의 융합에 대한 관심 속에 이와 관련된 기관을 신설하기까지 하였으나 관련 법(산업융합촉진법. 2011년 제정)에서는 기술과 인문의 연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할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심의할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예술관련 부분이 없어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참여할 여지가 매우 적음

○ 형식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내용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매우 적은 이러한 불일치를 개선하고, 해당 영역과 문화정책 분야의 협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기본계획' 안에 문화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노력 필요

- 법률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언급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조항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임을 명시

2. 협력사업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 법률은 주관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음

○ 각 법률에는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른 주관부처와 관계부처의 의무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지침 통보 의무
- 지침에 따른 소관분야의 계획과 시책 제출 의무
- 관계부처의 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공고 의무

○ 또한 주관부처에서는 관계부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주관부처장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나아가 법률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또는 차관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속한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에서 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이나 절차가 타 부처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칭 '정책책임관'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follow-up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성을 체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재능기부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사업에는 '문화예술'이 포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재능기부 활성화 정책영역과 중복
-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재능기부관련사업의 부처간 통합과 협력 필요

3. 부처 내 융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 마련

○ 현재 다양한 형태의 부처간 연계를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보다는 단절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부처 내에 영역간 융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직제(융합업무국 또는 과, 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연계를 뛰어 넘어 향후 타 정책영역간 융합사업, 융합과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융합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별도의 부서없이 관련 과에서 융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이러한 업무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인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서별로 융합업무를 추진하기보다 별도의 직제를 통해 융합업무를 담당케 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에서 융합업무는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비중을 인정받지 못해 활성화되거나 확장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우려가 큼

○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현재 조직체계 내에서 융합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업무분장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참고문헌

고경훈(2003),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전북 공립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3).

관계부처합동(2012),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

관계부처합동(2012), 제1차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2013-2017).

교육과학기술부(2010),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1),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

김상구(2002), 협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6(2).

김석준 외(2000), 뉴거버넌스연구. 서울:대영문화사.

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2012,07), "창조적 융합의 시대, 문화부와 지경부 손을 잡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2010.07),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 교육 기본 방안".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박호숙(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법무부(2008),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

법무부(2012),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보건가족부(2011),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1-2015).

서문기 외(2001),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서울:삼성경제연구소.

양현미(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성가족부(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행복 더하기」(2011-2015).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1.05.26), "여성가족부·문화부, 전국에 40개 '상상(相翔)학교' 만든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0.8.18),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오열근 외(2008),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한국학술정부(주).

윤종설(2007),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Governance 관점의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이창원(2007), 새조직론. 서울:대영문화사.

외교통상부(2010),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정용덕(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법문사.

조승현(200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리에 과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1).

최병선(1994), 부처간 정책조정의 개선:경제정책분야를 중심으로. 김영평·최병선(1994).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나남출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2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영국 3월 교육동향].

Astley, W. Graham and Charles J. Fomburn.(1983), Collective Strategy : Social.

Ecology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8(4).

Astley, W. Graham.(1985), The Two Ecologies : Population and Community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Evolu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

BOP Consulting(2011.02), SEA CHANGE EVALUATION Final Report.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Arbeiten- Lernen- Kompetenzen entwickeln. Innovationsfähigkeit in einer modernen Arbeitswelt, http://pt-ad.pt-dlr.de/de/94.php.

CRS in Germany,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www.csr-in-deutschland.de.

DCMS and Department for Education(2012), Cultural Education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http://www.culture.gov.uk/publications/8875.aspx.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Initiative Kultur- und Kreativwirtschaft,
http://www.csr-in-deutschland.de/en/csr-in-germany/activities-pursued-by-the-german-government//cultural-and-creative-industry-initiative.html.

Gage, R. W. & M. P. Mendell(1990), Strategis for Managing Intervovernmental Policies and Networks, New York: Greenwood.

Gary, Barbara(2004), Strong Opposition: Frame-based Resistance to Collaboration. Joournal of Community & Applied Psychology, 14.

Gress, Franz(1996), Interstae Cooperation and Territorial Representation in Intermestic Policies.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26(1).

Jamal, Tazim B. & Donald Getz.(1995),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rach, 21(1).

Jugendbildung in Baden-Württemberg Sonderausgabe Kooperation Jugendarbeit-Schule,
http://www.kultusportal-bw.de/servlet/PB/show/1284988/Jugendbildung%20in%20BW%20-%20Sonderausgabe%20Jugendbegleit.er-Programm.pdf.

KULTURELLE BILDUNG, REFLEXIONEN. ARGUMENTE. IMPULSE, http://www.bkj.de/fileadmin/user_upload/documents/Publikationen/Magazin_KULTURELLE_BILDUNG/bkj_kulturelle_bildg_nr3.pdf.

Living Places, http://living-places.org.uk/.

Mark(2004), Collaborative Environmental Institution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3).

McCall, C. H(1994), Local Government Cooperative Service Provision, 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 State of New York.

Moving Kids- Bewegungsförderung in gestaltbaren Umwelten,
http://www.gesundheitberlin.de/download/Legge-Kongressbeitrag_2005.pdf.

Painter, Martin(2001), Multi- level governance and the emergence of collaborative federal insititutions in Australia. Policy & Politikcs, 29(2).

Sea Change, http://www.cabe.org.uk/sea-change.

Stadtteilnetz Soziale Ökonomie für Kinder, Umwelt und Gesundheit, http://www.apug.de/archiv/pdf/Abschlussbericht-Stadtteil-Netz.pdf.

ABSTRACT

A study for the collaboration between arts & cultural policy and the other policies.

Kim, Sehun(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arts & cultural policy and the other policy areas. These days, such areas as science, industry and technology need 'new thinking' because they feel they cannot be developed in traditional framework. In the context, they pay attention to culture and the arts as new resources which can provide fresh insight to their areas. In spite of the necessities, however, their approach to the arts and culture are superficial and non-systematic. The cultural policy(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so makes the same mistake in collaborating with the other policy areas. It does not effectively use the opportunities for the collaboration by neglecting or ignoring them, which are provided by laws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the ar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s and the other policy areas, it urges open and active attitudes/minds to the cultural policy and suggests their 'collaboration' from the early stage of policy making process, 'manual making' for the collaborative process, and 'designation of an office and officer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 collaboration in the MCST.

It also recommends seven areas with which the cultural policy should make close relationship for the future collaboration. They are as follows; Science, Technology, National defence, Public health, Labo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부록 1. 문화분야 부처간 MOU 내용

—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업무협력 합의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세계 일류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Ⅰ. 기본 원칙

1. (고객 관점 견지)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부처 간 모든 현안 사항을 정책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조정 및 해결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역할과 책임)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의 주관부처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한다. 양 부처는 정부조직법, 각 부처 직제, 관계법령, 부처간 IT관련 업무영역 조정 합의사항(‘01. 7. 13.) 등을 중심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한다.

3. (통신·방송 융합 대비) 양 부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정책 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

4. (조정 시스템의 제도화) 양 부처는 향후 업무 중복 또는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협의 및 조정체계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Ⅱ. 업무조정 방안

1. (업무협력 방향) 문화관광부는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분야에서,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기술”과 관련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콘텐츠의 유통 및 보호, 수출 촉진 기타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한다.

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양 부처는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적극 협력하고, 2005년도 시행계획부터는 부처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정책현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세부 협력방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3. (규제의 최소화를 위한 공동노력) 양 부처는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조정결과('04. 9. 2. * 본문 별첨)를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하고 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o 온라인게임 심의기능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 o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조체제 구축 o 양부처는 온라인게임 심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조속 마련

4.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분야 기술개발과제 기획시 문화관광부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디지털콘텐츠 기술기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양 부처는 개발된 기술이 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5. (산하기관 및 단체의 사업 조정) 양 부처 산하기관과 단체의 지원사업은 중복 방지 및 사업간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2005년부터 양 부처 공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 게임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며, 기존 국내 개최 중소게임 전시회는 통합하여 추진한다.

   양 부처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등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6.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와 IT 콤플렉스의 연계) 2007년 서울 상암동에 들어설

예정인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와 정보통신부 IT 콤플렉스의 기능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콤플렉스조성사업단장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IT콤플렉스기획단장 간에 매월 정기 모임 및 현안 발생시 수시모임을 개최한다.

Ⅲ. 협의의 제도화

1.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부처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아래와 같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o 구성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게임음반과장, 문화콘텐츠진흥과장, 담당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지식정보산업과장, 정보이용보호과장, 담당 o 운영 - 격월로 정례 협의 및 현안 발생시 수시 협의 진행 - 협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공무원 참여 가능

산하기관 차원에서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부처간 소통 활성화) 장관 교차 강연, 공동 워크숍의 개최와 현장체험 방문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부처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부처간 인사교류 실시) 양 부처 정책담당자 간의 인사교류를 적극 검토한다.

2004년 10월 1일

–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의 연계발전을 위한–
문화관광부·과학기술부 업무협력 합의서

문화관광부와 과학기술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갈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 CT)의 육성을 통하여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 및 공동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상호협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업무협력 방향) 양 부처는 핵심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2. (핵심인력 양성) 양 부처는 문화예술적 소양 및 인문사회적 사고를 가진 이공계 전문인력과 과학기술적 사고와 지식을 겸비한 문화산업 종사자 등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CT 대학원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인력양성사업에 공동 노력한다.

3. (기술개발) 양 부처는 C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연구기관 설립·운영, 산하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및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과학문화 진흥) 양 부처는 과학기술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진흥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처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아래와 같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 구 성
> – 문화관광부 : 문화산업국장, 콘텐츠진흥과장, 담당자 등
>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기반국장, 과학기술인육성과장, 담당자 등
> ○ 운 영
> – 분기로 정례 협의 및 현안 발생시 수시 협의 진행
> – 협의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 적극 참여

6. (부처간 교류 증진) 장관 교차 강연, 공동 워크숍의 개최와 현장체험 방문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책자문위원 교차 추천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품격 높은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권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국가사회의 미래와 문화국가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 부처의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본방향) 양 부처는 농어촌의 기초생활권의 문화적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의 권한 및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협력사업과 세부 실천 과제 발굴 및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2. (역할 및 책임) ① 양 부처는 소관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재원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② 양 부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 산하기관・단체 등 유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각 사업이 지역의 정책 여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부처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각 사업별로 양 부처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3. (협력분야) 양 부처는 농어촌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제도정비 및 통합 지침의 마련
   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 프로그램 보급
   3.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4. 농어촌 기초생활권 지역 고유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5. 농어촌 기초생활권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협력
   6. 양 부처 관련 산하기관・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4. (정보 공유) 양 부처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기초생활권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하여 협약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5. (교류 및 협력) 기초생활권 삶의 질 제고 관련 공동 조사·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현장 체험방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통해 부처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6.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7. (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기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0. 4. 27.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추진을 위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행복한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해「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 방향】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이 건전한 법의식의 바탕 위에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과 세부 실천 과제 발굴 및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제2조【주요 협약사항】양 부처는 법과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문화시민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지원한다.

① 법 게임 등 법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가.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교육용 기능성게임 개발·보급

나. 청소년 대상 법과 문화가 결합된 여가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② 저작권 보호 및 의식 강화 사업

가.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등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나. 일반 국민 및 저작권 위반자 대상의 교육 강화

다. 저작권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③ 문화콘텐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④ 소년원학생·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 비행청소년, 교정 수형자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제3조【정보 공유】양 부처는 ‘함께 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협약 사업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4조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및 홍보】 양 부처는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성과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한다.

제5조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기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0년 6월 8일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양 부처”)는 양 부처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체험 확대, 스포츠 활동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여가 활성화 지원 등 저변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조(역할 및 책임) ① 양 부처는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주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협력사업이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부처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각 사업별로 양 부처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2장 협력 내용

제3조(청소년 문화·예술체험의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전문인력,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복지시설과 관련 청소년전문인력,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질의 문화예술체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② 양 부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
2. 청소년 수련시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순회 사업 지원
3. 청소년동아리 문화예술 멘토 지원
4. 소외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제4조(청소년 언어순화·인성교육 강화) 양 부처는 각종 대중매체의 언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전한 언어사용 습관을 기르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한다.

제5조(기타 사업의 협력) 상기 사업 이외의 사업과 과제에 대하여는 양 부처가 수시로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6조(기간) 동 업무협력 합의서는 양 부처의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되, 양 부처가 상호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한쪽 당사자가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할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실무협의회

제7조(구성 및 기능) ① 양 부처는 동 업무협력 합의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민간 전문가 등 기타 구성원에 대하여는 양 부처 팀장이 합의하여 포함하되 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관(팀장) 및 관련 부서 과장
2.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관(팀장) 및 관련 부서 과장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시 양 부처가 합의하여 수시 개최한다.

2010. 8. 18.

–문화와 기술의 융합 및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업무협력 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기술·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류문화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과 한류의 동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업무협력 방향) 양 부처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적 활용과 기기–서비스–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2. (한류문화 및 산업진흥) 양 부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타 산업 연계 확산, 전통지식의 산업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신시장 개척과 한류문화 진흥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기술 개발 및 혁신) 양 부처는 문화·기술의 융합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산하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융합인재 양성) 양 부처는 문화예술적 소양 및 인문사회적 사고를 가진 이공계 전문인력과 과학기술적 사고와 지식을 겸비한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5. (기업 메세나 지원 및 창의적 문화 조성) 양 부처는 기업 메세나(문화예술 후원활동)와 '창의경영,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업·산업현장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접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6. (해외진출 및 홍보) 양 부처는 문화예술 콘텐츠, 한류 연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전시 참가, 한류 관련 행사의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7.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양 부처는 대한민국의 문화·기술의 홍보와 첨단기술의 체험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8.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처 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9. (부처 간 교류 증진) 장관 교차 강연, 공동 워크숍의 개최와 현장체험 방문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책자문위원 교차 추천 등을 통해 부처 간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여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2012년 7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 2부를 작성하였다.

부록 2. 타분야 법률 중 문화관련 조항 및 내용

□ 교육, 학술분야

평생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과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산간지역
2. 낙도(낙도)
3. 수복지구(수복지구)
4. 접적지구(접적지구)
5. 광산지구(광산지구)
[전문개정 2007.12.21.]

교육기본법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9조 (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 (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육협력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2. 삭제 <2008.2.29>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4.15, 2011.6.7, 2012.2.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4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학원·교습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체육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3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해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목개정 2010.4.15]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 기술

과학관육성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획팀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7.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자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자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5.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⑦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2.4.]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8.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0.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1.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議題)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27.]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성을 기르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이나 보조는 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만 해당한다.

④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⑥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⑦ 정부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정·경제 일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제5조(구성원 등) ① 삭제 <2005.2.25>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0.7.12>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국고과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고용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한국은행 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복권총괄과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0.6.4>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정착지원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①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⑥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사회차별시정과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장관
3.「아동복지법」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2011.4.4>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과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노동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
②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외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국가에 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재외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재단법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세 훈(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공동연구

안 지 호(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

전 민 정(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졸)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영역간 협력 방안

발 행 인 박 광 무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2년 9월

발 행 일 2012년 9월

인 쇄 인 (주)계문사

ISBN : 978-89-6035-366-4 93330